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7호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 (관계부처 합동) ····· 1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건복지부) ····· 5
   - [참고]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사회 ····· 13

3.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25

4.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지방시대위원회) ····· 34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 40

6.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 46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충청북도) ····· 65

2.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경상북도) ····· 70

3. 지방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율 분석(나라살림연구소) ····· 74

4.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광주광역시) ····· 82

5. 신혼(예비)부부에 '천원주택' 파격 공급(인천광역시) ····· 89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 ····· 95

2.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98

3.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국회입법조사처) ····· 101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104

5. 강원 소상공인 살리는 최저임금 차등화 하자 (강원연구원) ····· 108

6.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연구원) ····· 112

7.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국회도서관) ····· 123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 131

2.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차별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37

3.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141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 (관계부처 합동)

◇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내용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7.1.)
◇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및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 포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인구부 (정책기획·평가, 예산배분·조정) / 복지부 (출산·아동·노인) / 고용·여가부 (일가정양립) 등

1 관계규정

○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4.7.11.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8인)

2 중점사항

○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급감 위기 대응 전담 조직** 구성/기능 개편
○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위한 **'정무장관'** 신설

3 주요내용

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예산배분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② **구체적 정책 및 사업 : 각 부처**가 담당

* 출산·아동·노인 (복지부), 일가정양립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 (여가부) 등

③ **부문별 기능** 이관 및 신설 :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

《각 부처 → 인구전략기획부로의 기능 이관 및 신설》

- **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 **기재부** :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 **(공 통)** : 부처별 **인구위기 대응정책** 조사·분석·평가
- **신설 기능** :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④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통한 법률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기능조정

* 교육부장관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 수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

⑤ **정무장관** 신설 : 이해관계 갈등 조정, 단일 부처 대응 어려운 난제 해결 역할 등

◇ 주요 법 개정사항

「정부조직법」

구 분	기 존		개정안
부총리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 기획재정부장관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	▸ 관장사무 -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 -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기획재정부 사무조정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인구에 관한 사항 제외)
행정각부 순서 조정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략) … 19. 중소벤처기업부	⇒	1. 기획재정부 **2. 인구전략기획부** 3. 교육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략) … 20. 중소벤처기업부
정무장관 신설	-	⇒	▸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수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구 분	기 존		개정안
직무범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기존 + **인구구조변화 적응**
정책대상	▸ 저출산·고령화 초점	⇒	▸ 기존 + **이민, 주거지원** 등 포함
책임 명확화	▸ 대통령 주재 위원회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관 ※ '인구위기대응위원회' ▸ 사무기구 폐지
위원 참여 확대	정부·전문가 위주	⇒	기존 + 청년·양육부모 등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	-	⇒	▸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 중앙·지자체 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시 **인구부와 사전 협의** ▸ 중앙·지방 **인구정책 평가**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및 관계부서]

❶ 전북도, 전국 네 번째로 소멸위험지수 큰 지역으로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발표 ('24.6.)

《전국 17개 시도 지방소멸위험지수》 ('24.3.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인구(순위)	20~39세 여성인구(순위)	65세 이상 인구(순위)	지방소멸위험지수(순위)
서울	9,384,739 (2)	1,423,381 (2)	1,757,310 (2)	0.810 (16)
부산	3,287,292 (3)	369,843 (4)	755,240 (3)	0.490 (8)
대구	2,369,962 (7)	261,900 (6)	473,239 (8)	0.553 (9)
인천	3,006,045 (5)	372,658 (3)	506,794 (6)	0.735 (13)
광주	1,415,774 (14)	173,540 (10)	236,934 (14)	0.732 (12)
대전	1,441,689 (13)	182,900 (9)	248,590 (13)	0.736 (14)
울산	1,101,336 (15)	113,962 (15)	179,142 (15)	0.636 (11)
세종	387,411 (17)	48,243 (17)	43,363 (17)	1.113 (17)
경기	13,642,451 (1)	1,688,173 (1)	2,162,852 (1)	0.781 (15)
충북	1,591,044 (11)	164,288 (12)	337,101 (12)	0.487 (7)
충남	2,132,745 (8)	213,474 (8)	460,219 (9)	0.464 (6)
전남	1,798,435 (9)	156,313 (13)	474,469 (7)	0.329 (1)
경북	2,546,960 (6)	220,974 (7)	637,885 (5)	0.346 (2)
경남	3,241,374 (4)	301,589 (5)	679,018 (4)	0.444 (5)
제주	673,103 (16)	72,202 (16)	122,434 (16)	0.590 (10)
강원	1,524,198 (12)	144,263 (14)	371,982 (11)	0.388 (3)
전북	**1,749,376 (10)**	**168,033 (11)**	**426,772 (10)**	**0.394 (4)**

※ 지방소멸위험지수 :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큰 지역으로, 전북은 '소멸위험진입단계'

* 1.5이상(매우 낮음)→1.0~1.5미만(보통)→0.5~1.0미만(주의)→0.2~0.5미만(위험진입)→0.2미만(고위험)

❷ 전북도, 인구정책 기획 및 계획수립 조직 열악

《전국 9개 도 단위 지역 인구정책 부서 현황》 ('24.7.4.기준, 각 지역 조직도 기준)

구분	부서규모	부서명	구성원(명)	비 고
경기	과	인구정책담당관	15명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內 1과3팀 구성
충북	팀	인구정책팀	6명	기획관리실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內 구성
충남	팀	인구감소대응팀	2명	균형발전국 - 인구활력과 內 구성
전남	팀	인구정책팀	6명	인구청년이민국 - 인구정책과 內 구성
경북	팀	인구정책팀	4명	저출생극복본부 - 저출생대응정책과 內 구성
경남	팀	인구대응팀	5명	교육청년국 - 청년정책과 內 구성
제주	팀	인구정책통계팀	5명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內 구성
강원	팀	지역소멸대응팀	5명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과 內 구성
전북	**팀**	**인구정책팀**	**3명**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과 內 구성**

▸ 전북, 9개 도 단위 지역 中 4번째로 지방소멸위험지수 높으나 인구정책 기획 관련 부서 규모(구성원수 기준)는 충남(2명)에 이어 2번째로 적음

❸ 정책제언

○ 도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체 개념의 **'인구활력추진단'**을 설치, 지난 5월에 시군과 소통회의 개최

○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연구원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등 논의

○ 또한 이달에는 △취업·결혼, △건강한 출생, △행복한 양육,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등 네 개 분과로 나누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형 '저출산 대응TF'팀**을 구성, 첫 킥오프 회의 개최

○ 하지만, 이와 같은 **협의체 수준의 한시적 기구**로 **'인구절벽'**에 다다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며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까지 부여하는 등 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기틀 마련**이 요구됨

① 최우선적으로, 그간 도와 각 시군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수립한 정책 및 투자사업의 **효과 분석부터 실시**하여 또다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예산**이 아무런 **의미 없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소거**하고 정부의 인구 정책과 연계된 사업 중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도에 접목할 방안을 찾아 **재정을 집중**해야 하며,

③ **정부의 장관급 인구 부처 신설**에 발맞춰 **인구정책 기획부서의 규모**를 키워 앞으로의 **정책 실행과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겠고,

④ 인구감소 위기 대응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지역 주력산업 육성, 교육, 주거복지 등 **도정 全 분야**에서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을 실행**하는 바, **총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 인프라**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

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지방재정으로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재원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겠음

*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겠다 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종부세 폐지 추진 등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건복지부]

◇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범정부적 대응으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방안 발표**('24.06.19.)

1 추진배경 및 현황

□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 심화**,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에도 불구하고 **혼인 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급증**함

○ **(혼인율)** 혼인율의 지속 하락, 특히 **20대의 혼인율 8%**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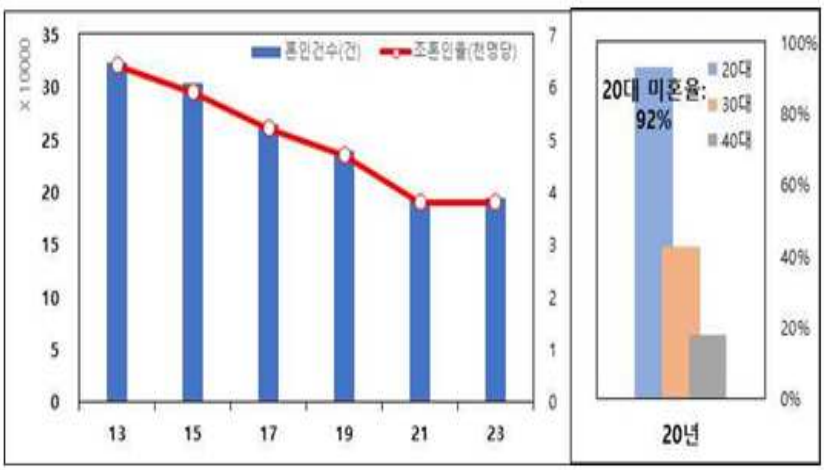
(혼인건수) '13년 32.3만 건 → **'23년 19.4만 건(약 40% 감소)**

※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①결혼자금 부족(33.7%) ②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 ③출산·양육부담(11%) ④고용상태 불안정(10.2%)으로 나나탐 <'23년 청년의식 변화조사(통계청)>

○ **(출산율) 25~34세 출산율 및 중산층 출산율 하락**,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율이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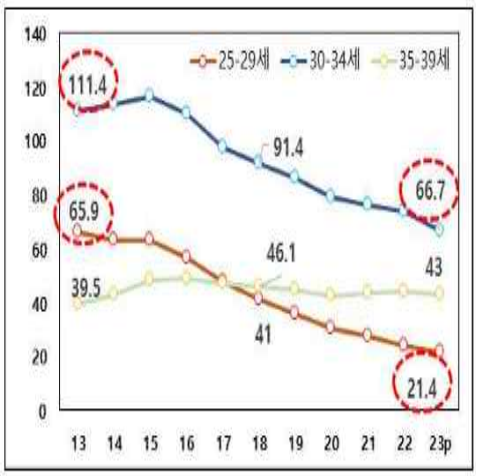
(유배우 출산율) 첫째를 낳은 비율 급락으로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이 '10년 4.4%에서 **'20년 8.4%으로 늘어남**

<혼인율 추이 및 연령대별 미혼율>



<출처: 통계청>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연령별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그 결과, 유례없는 속도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급락**하고 있고, 인구 자연 감소와 더불어 **유소년 인구 급감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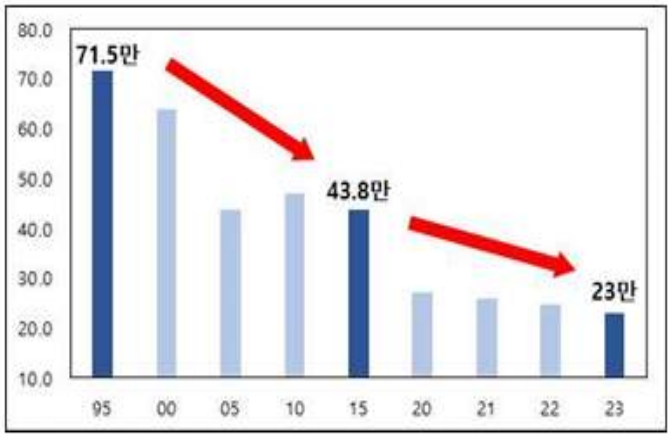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15년 1.24명 → '23년 0.72명**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생아수) '15년 43.8만명 → '23년 23만명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인구감소) '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 진행**(출생아수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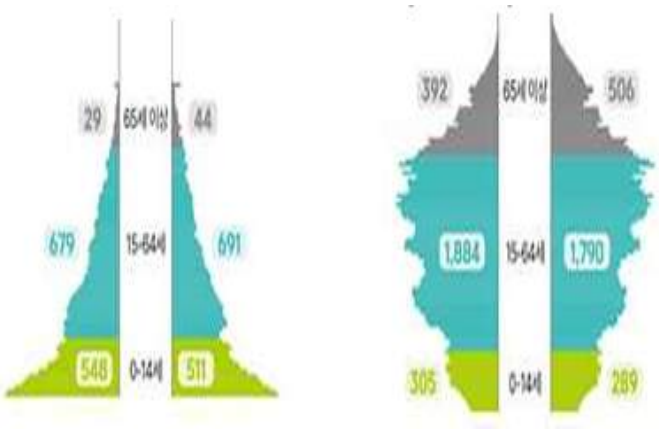
(인구구조) 유소년 인구 급감으로 **'피라미드형' → '종형'으로 변화**

<연도별 출생아수 추이>



<출처: 통계청>

<인구피라미드 변화('60→'22년)>



2 추진방향

□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총력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 창출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

-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폐지 + 한시적으로 대폭 지원
- 아이 낳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제도·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유자녀가정 혜택 확대
- 출산·양육 등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 원칙
- 수요자 중심 + 사각지대 해소
- 현장 실행주체인 기업,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유도

○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인식 및 관행 변화 유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저출생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 각계각층과 소통·협력 강화 + 젊은층에 맞는 넛지(nudge)식 홍보
- 민간 주도의 범국가적인 캠페인
-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논의의 장(場)을 적극 마련

○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노력**

-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추진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관리

3 세부 추진과제

□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을 확대 및 각 부처에 산재한 **저출생 사업 통합관리 실시**

①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인구 비상대책회의 신설'**

: 現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 후 **매월개최, 필요시 지자체, 교육청,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등과 연석회의** 개최

▶ **향후 모든 정책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 하나로 설정·추진**

② **합계출산율 반등 달성에 총력**

: 기존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추진,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여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 **신설 검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및 실효성있는 사업지원

▶ **(보통교부세)**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되도록 반영률 확대**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 유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 확대 및 활용** 유도(행안부)

□ **3대 핵심분야** 대응을 위한 ①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③ 주거부담 없고 **결혼·출산 친화적 방향 지원 확대**, 이 밖에도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 노력 강화,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및 관계부서]

○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대응하고자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함('24.07.01.행안부)

○ 또한,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정책 범위를 여성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중심 '저출산정책' 에서 **주거·교육 등 사회구조개혁을 아우르는 '저출생정책'으로 확대** 계획을 밝힘

> ▸저출산 : 가임여성(15~49세)이 낳는 출생아 수가 적은 현상
> ▸저출생 : 전체 인구 중 출생아 수가 적은 현상을 지칭

○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지역소멸 위기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이 반복되었는데,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12개 부서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생 대응 TF팀'을 구성하여**('24.07. 청년정책과 총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중 발표 예정임 [TF구성 및 운영안 참고]

○ **경상북도**는 정부 대응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조직**인 **'저출생 극복 TF'를 시행**하고('24.1.)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 7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로 정식 국 체제로 확대 출범함.** 경북도는 그동안 **초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등 다양한 정책(예: 청년 결혼자금지원, 아파트 돌봄센터, 산업단지 내 대형 돌봄센터 구축 등) 시도를 펼쳐왔음.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세 확보(1,100억원) 및 저출생 우수정책사례로 선정, **저출생 및 지방소멸의 선도적인 극복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전국 최고 수준의 저출생 및 고령화와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심한 **전북도**의 경우,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 후 저출생대응 TF구성 등 그동안 대처가 소극적인 편이었음. **정부가 보통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사업에 예산 확대 계획**을 밝힌바, 도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남성 육하휴직 등) 의식전환 캠페인** 등 종합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참고1 전북자치도 저출생 대응 TF구성 및 운영안

□ TF 구성(안)

○ (구성) 12개 과* 담당 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등 ※ 주재 : 행정부지사

* 기업유치과, 기업애로해소과, 예산과, 청년정책과, 총무과, 사회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주택건축과, 교육협력추진단, 소방본부(119대응과) / 협조: 대변인실, 소통기획과

○ (분과) ①취업·결혼, ②건강한 출생, ③행복한 양육, ④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 분과위원장 : 도 부서장이 맡으며, 사업발굴, 사업내용 전반 주관

○ (정책발굴 지원)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원 매칭

○ (부서별 주요업무)

- **(청년정책과)** 저출생 TF 총괄, 결혼식 및 미혼남녀 만남 지원 등 결혼장려 인센티브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연대 구성 및 사회인식개선 등
- **(기업애로해소과)**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급여 보전 등 기업부담 완화 (ex. 광주·경북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서울 육아휴직수당 최대 120만원 지원)
- **(기업유치과)** 다자녀가구 고용 우대 기업참여 유도(고용보조금 추가지원 등)
- **(총 무 과)**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 제도 마련, 청내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 등 (ex. 경북 아빠 한 달 휴가 도입, 충남 0~2세 자녀 둔 직원 대상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 **(예 산 과)** 공공기관·출연기관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 및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 촉진
- **(주택건축과)** 임신·출산 가구 대상 주거부담 경감(ex. 전남형 만원주택)
- **(사회복지정책과)** 상생형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정책 등(ex. 충남 0~5세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 **(여성가족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양육·돌봄 지원(ex.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충남 풀케어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ex.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보건의료과)** 필수의료 지역의료체계 구축(ex.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
- **(건강증진과)** 출산인프라 구축, 난임·출산·임산부 지원(ex.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
- **(교육협력추진단)** 늘봄학교 연계 등 초등돌봄 공백 대응(ex.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청소년 지원사업 등
- **(119 대응과)** 119 연계 영유아 구급서비스 지원(ex. 경북 119 아이행복돌봄터 운영)

□ 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24. 7. ~ 협력체계 정착 시 ※ 전북도 저출생 대응 위한 대책 수립·발표(9월 중)

○ (일정·장소) TF 회의(월 1~2회), 분과회의(수시)

○ (운영방향) 저출생 대응 사업(기존, 신규) 발굴 및 추진 상황 논의, 발굴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논의 등

○ (추진절차) 사업발굴 → 논의 → 발굴사업 선정 → 계획수립 → 시행 → 점검 → 성과·환류

참고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개관 및 추진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자료 참고('24.06.19.)



신혼출발 든든하게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α로 확대 (기존 7만호)
-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호 수준)에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전체물량의 최대 70%)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원→2.0억원)
-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27년까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8%→23%, 약 1만호 추가)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최대20년)
-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임신·출산 걱정없게



건강한 임신준비 지원

-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최대 3회)
-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검토
-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50%→30%, 연령차별 해소)
-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난임 휴가 확대(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 및 분할사용 허용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제왕절개 출산 본임부담률 경감 (5%→0%)
- 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유보통합으로 질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제공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기본8시간+추가4시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0세반 1:3→1:2, 3-5세반 1:12→1:8)
- 영유아 교육·돌봄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24.7월~)

누구나 언제든 누리는 돌봄서비스

-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
-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 확대 ('27년 3,600개 반)
- 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27년까지 30만 가구)
-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150%→200%) 확대
-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긴급·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 (1,200명 목표)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 (5,000명)



초등돌봄 빈틈없게

지역맞춤 돌봄 확대

-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

늘봄학교 전면 확대

-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까지)
-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4

5

양육부담 줄어들게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 (첫째아/둘째아/셋째아 : 15/20/30→25/30 /40만원)
-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현금 지급, 사용기한 제한(2년) 폐지
- 수요자 희망 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3자녀→2자녀)
-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8구간→9구간, +10만명)
- 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자녀와 외출이 부담 없도록 지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임산부 Fast Track 도입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6

일·가정양립 가능하게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現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분할사용횟수(1회→3회) 확대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 육아휴직 미사용시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초2→초6)
- 대체인력 미채용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30만원) 패키지 지원

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연1회, 2주단위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일정기간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추가 육아휴직), 지원금 중액 (월 80만원→120만원)
-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5일→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참고]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사회 [국회도서관]

◆ 주요내용 및 전북자치도 현황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통계청에서 인구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 최대 5,184만 명**을 기록함.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70년에는 3,71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 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 23만 명으로, 사망자수는 1970년 26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35만 명을 기록함. **저출생 현상과 함께 인구의 자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약 **2,601만 명**으로, 이는 **비수도권 인구인 약 2,531만 명보다 약 70만 명이 많은 수치**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이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24.03.) 기준으로 한 **전북자치도의 소멸위험지수는 0.394로 전국 평균 0.615보다 크게 낮았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소멸위험지수 역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심각한 상황임(전남 0.329, 경북 0.346, 강원 0.388, 전북 0.394)

*소멸위험지수 :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



<그림출처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전북일보 240703)>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전북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이 심화된 주원인으로 출생아 수 감소 및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북 지역 출생아 수는 6,62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만4,555명에 비해 약 45% 급감**함. 같은 자료에서 전북 지역 **사망자 수는 1만 7,211명**으로 **2013년 1만 3,492명보다 약 27% 증가**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심화로, 학교 통폐합 및 폐교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전북의 초·중·고 학생수**는 **'14년 학생수 24만2474명**에서 **'24년 17만8798명**으로 **26.3% 감소**하였으며, 학생수 감소로 인해 농산어촌 및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통합 및 폐교가 증가하여, **전북 지역 폐교 수는 총 349개교로** ('24.3.기준), 24년 6월 현재 폐교 수도 10곳*에 이름

*'24년 폐교현황 : 완주(삼례여중), 김제(금남초, 화율초), 정읍(관청초), 군산(비안도초, 대야초 광산분교), 부안(주산중, 장신초, 백련초, 계화초) <출처: 전북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북 지역의 낮은 출생률로 **어린이집 휴·폐업 확산도 심각**한 상황임. 기사[1]에 따르면, 전북 어린이집 수는 **2014년 1천 654개소에서 5월 기준 910개소 약 48% 절반가량 감소**함.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어린이집 정원 미달이 심각하며, 특히, 진안군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정원 396명 중 143명만 채워 충족률이 36%밖에 못 미침

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3년) 전북 청년인구(20~39세) 3만 3천319명**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사회지표로 본 청년의삶 통계(호남지방통계청, '24.06.)>를 보면 **전북 지역 청년**(19~34세 대상) **'결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중이 '12년 56.9%에서 **'22년 35.4%로 10년전보다 감소**하였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 고 생각하는 비중이 '18년 42.4%에서 **'22년 46.9%로 증가**하였음. 또한,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 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23년 53%**으로 '13년 대비 8.9%p 증가함

1) '그 많던 어린이집은 어디로 갔나?'…저출생 후폭풍 (연합뉴스 240629)

◆ 인구 분야

▪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통계청에서 인구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 최대 5,184만 명을 기록함.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70년에는 3,71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 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 23만 명으로 사망자수는 1970년 26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35만 명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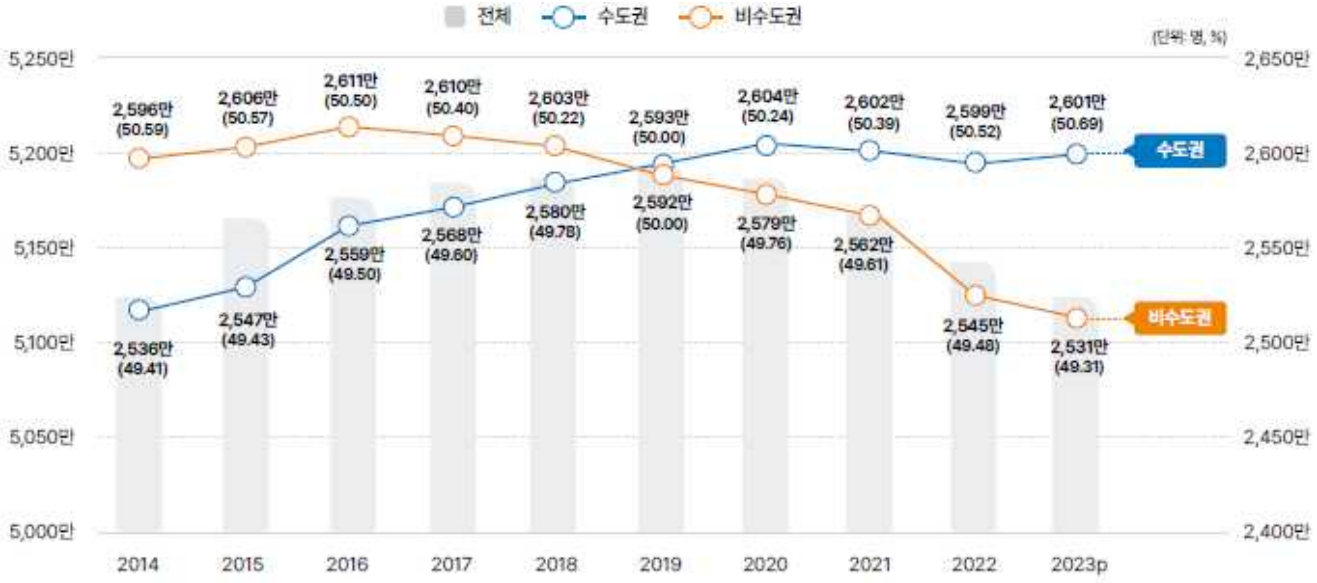
▪ 시·도별 합계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으로, 2013년과 비교해 39.3%가량 감소한 수치임. **시도별합계출산율**을 보면 **모든 시도에서 1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하던 세종시도 2023년에는 1명 미만(0.97명)으로 내려앉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2014~2023)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약 2,601만 명**으로, 이는 비수도권 인구인 약 2,531만 명보다 약 70만 명이 많은 수치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이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

◆ 혼인 분야

▪ 혼인건수 및 인구 1천명당 혼인율 추이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1996년 43만 5천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점 감소, 2023년에는 19만 4천 건, **2023년에 인구 1천 명당 혼인율은 3.8건**을 기록함



* 2023년은 잠정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70~2023)

▪ 평균 초혼 연령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혼인 시기가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음**.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3년 30.1세였고, 2023년 34.0세로 여자의 경우 2003년 27.3세였고, 2023년에는 31.5세임



출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3.19.

▪ 연령별 혼인율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2013년에 비하여 **2023년에 남녀 모두 20대 후반(25세~29세)이 가장 많이 감소**함. 20대 후반 남자의 혼인율은 2013년 47.1건에서 2023년 19.2건, 여자의 경우 2013년 79.9건에서 2023년 34.2건으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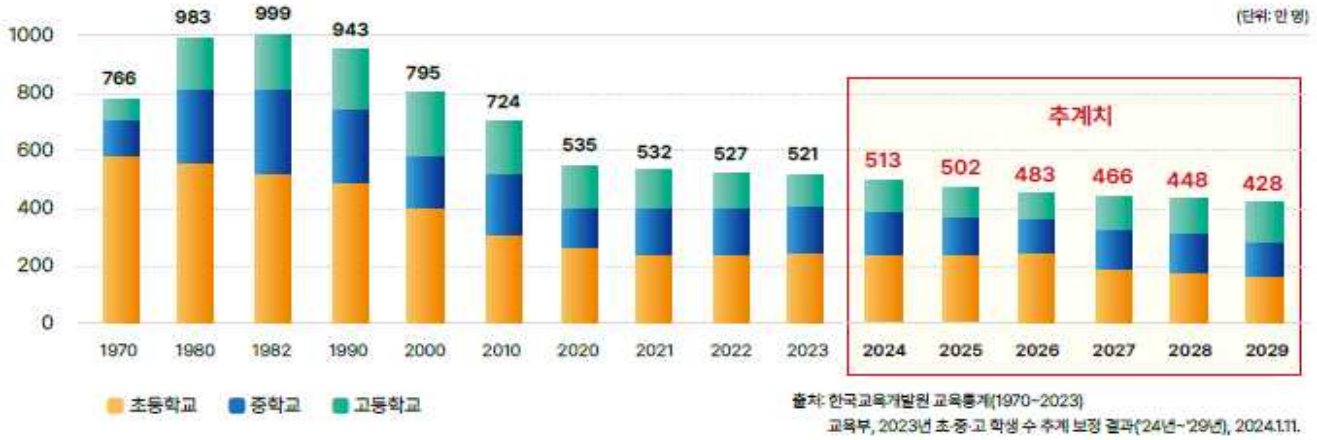
* 혼인 통계에서 혼인율은 백분율 사용 시 수치가 작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천분율(1000분의 1을 하나로 하는 단위)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3.19.

◆ 교육 분야

▪ 초·중·고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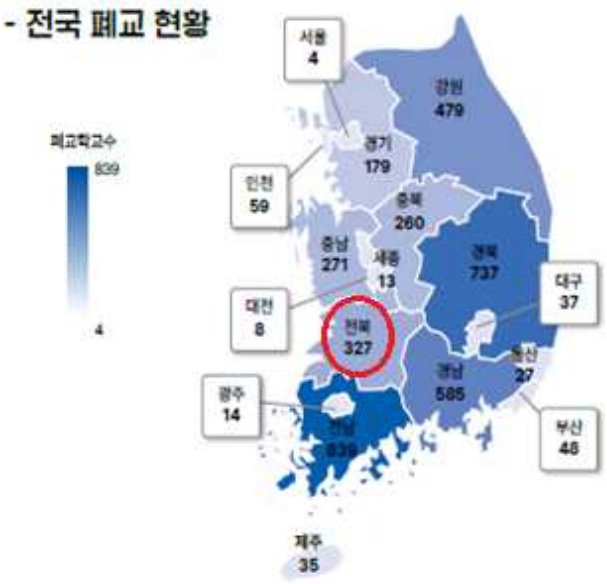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1982년 999만 명 최고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3년 학생 수는 521만 명임. **'2023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4년~'29년)'에 따르면, **2029년에는 42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1970~2023)
교육부, 2023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4년~'29년), 2024.1.11.

▪ 전국 학교의 폐교 및 소규모화

2023년 3월 1일 기준, **전국 폐교 수는 3,922개교**로, 이 중 358개(9%)의 폐교가 미활용인 상태임. 한국교육개발원(2021)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 교 중** 26.3%인 **1,657개 교가 '소규모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학생 유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휴교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전국 폐교 3,922개 중 2,587개(66%)는 매각되었고, 977개 (25%)는 활용 중임

** 폐교의 경우, 학생 수, 학급 수, 통학거리 등을 기준으로 폐교 여부를 결정함.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의 경우 1981년 180명, 1993년 100명, 2006년부터는 60명이하 하향 조정되어 왔음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 2023.

* 해당 연구는 2025년 기준 학교소규모화 지수를 1단계(고위험), 2단계(위험), 3단계(주의), 4단계(위험 보통), 5단계(위험 낮음)로 구분함

** 소규모 학교의 기준으로 교육부는 2016년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기준'을 제시함. 초등학교 기준으로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읍 지역은 120명, 도시지역은 240명 이하임.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2021.

▪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 추이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증가**함.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78.5%에 이름. **2023년** 학생 수는 2022년보다 6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조 1천억 원(4.5%) 증가**함



출처: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3.14.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와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미활용폐교 활용 특례 규정 개정, 소규모 학교 지원, 학교규모에 대한 법정 기준명시 등의 법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사교육 수요를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방과 전·후 학교, 돌봄교실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 주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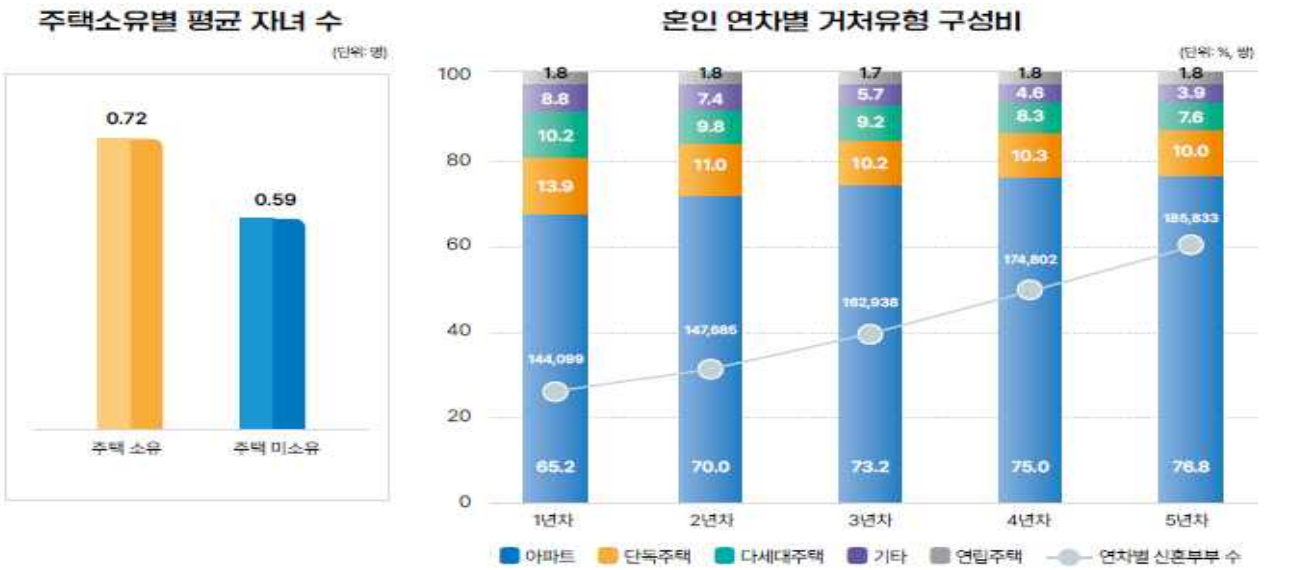
▪ 신혼부부 가구 주거 관련 통계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1.3%이나, **혼인기간 7년이하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49.0%**임.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이 수도권 지역 55.8%, 수도권 이외 지역 66.6%인 것과 비교하여,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수도권지역 39.2%, 수도권 이외 지역 60.5%**로 수도권 지역 자가보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임. 한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자가보유율은 2020년 이후 40% 아래로 나타남



*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정책대상이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됨.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23.4.



출처: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결과, 2023.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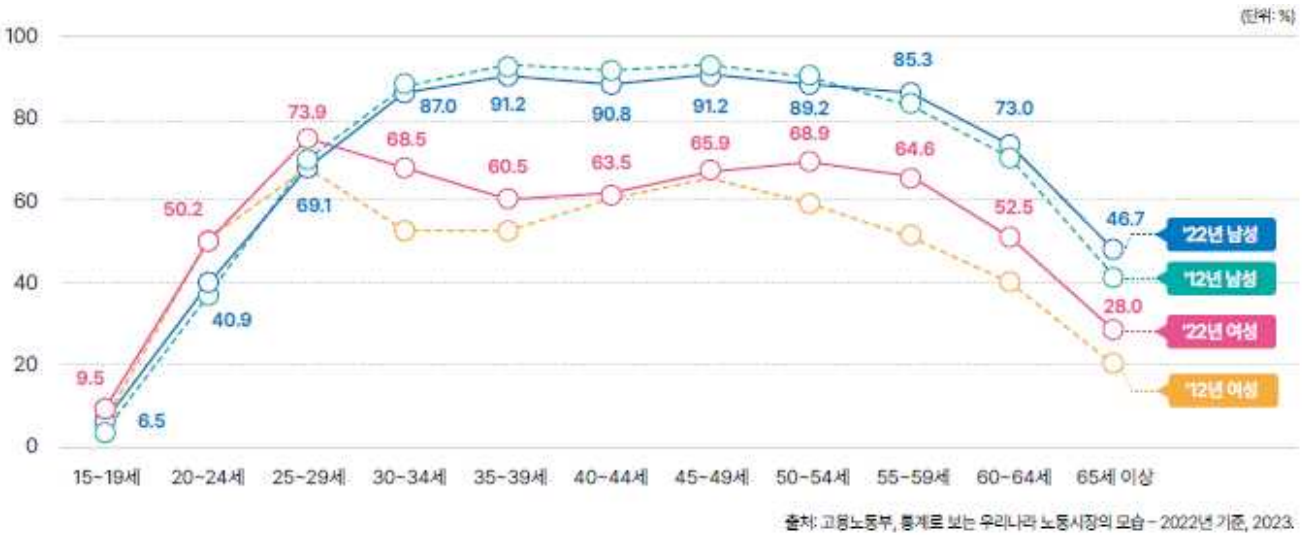
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미소유 신혼부부의 자녀 수보다 **주택 소유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20% 이상 많고**, 이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 소유 유무가 평균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혼인기간 5년 이하 초혼 신혼부부는 거처유형 가운데 아파트를 선호하며,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은 더 높아짐

cf.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특례대출을 개시한 2024년 1월 말 이후 출시 반년 새 약 5조 8,600억원이 신청**되었다. **주택매수 지역의 3분의 1이 경기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였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조건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연희 국회의원실 자료 240707.>

◆ 노동 분야

▪ 성별 고용률

2022년 여성 고용률은 2012년과 비교하여 상승함. 그러나 **2022년**에도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30세 이후 하락**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M-커브 모양**이 유지함. 남성은 2012년과 2022년 모두 여성과 달리 30대에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급속히 상승하여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90%를 상회함



출처: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2022년 기준, 2023.

▪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5~54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고**, 25~34세의 경우 약 2.8배, 35~44세의 경우 약 2.5배 높았음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3.

▪ 경력단절 전·후 고용형태 변화

25~54세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 일자리 비율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비율은 증가**함.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하거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주당 평균 근로시간 수와 월평균 임금도 감소함. 이를 통해 **경력단절 이후 여성의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을 알 수 있음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경력의 단절과 일자리의 질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경력단절 이후 이를 이유로 한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

◆ 의료 분야

▪ 불임과 난임시술 진료비 증가

2018년에 비하여 2022년 불임 환자 수는 4.7%, 연간 총 진료비는 96.5% 증가. 또한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0%, 연간 총 진료비는 68.0% 증가.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2023.5.25.

▪ <u>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u>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감소, 수련병원에서 필요한 전공의 정원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에 78.5%였는데, **2024년 25.7%로 52.8% 감소**함. 반면, 소위 인기 과인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지원율은 5년 평균 160%를 넘음



*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전공의와 결원이 발생한 상급년차 전공의를 모집하여 선발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3.12.27.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6798], 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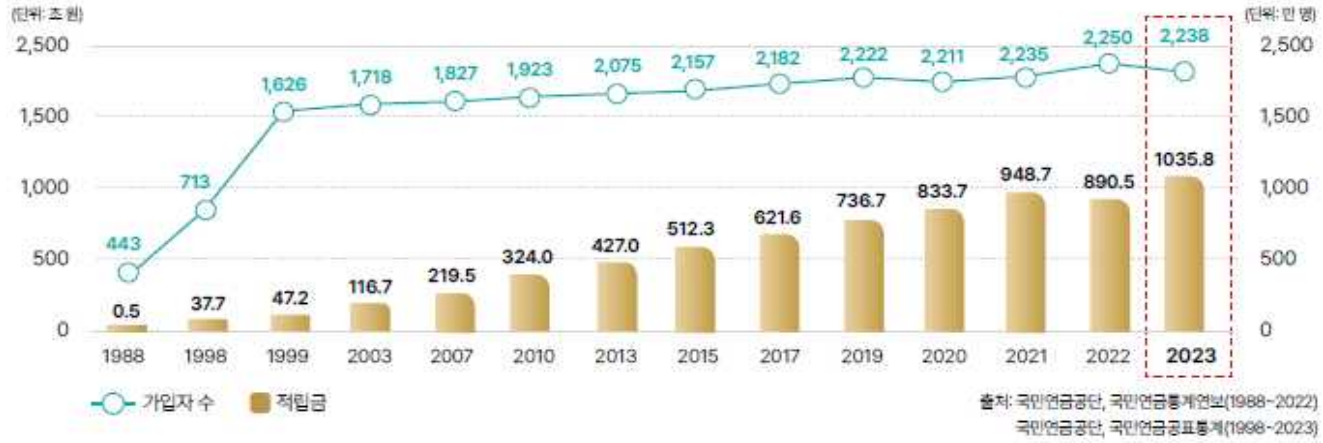
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의료지원 관련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저출생과 저수익 등의 이유로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 및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무 여건과 수련환경 개선, 적정한 의료수가 보상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 연금 분야

▪ <u>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적립금 현황</u>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운용규모가 1035.8조 원에 이르고 있음.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 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2년 2,250만 명으로 최고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2,238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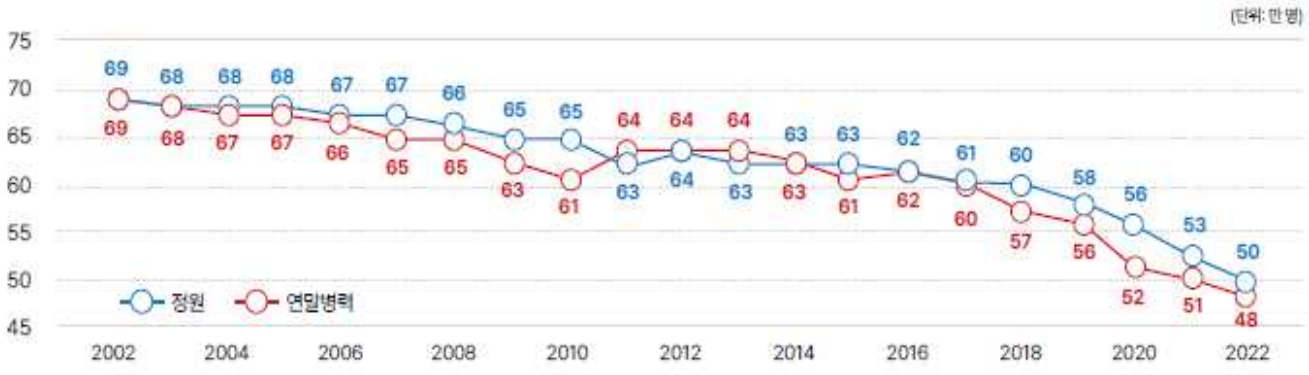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 국방 분야

▪ 상비병력 정원과 연말병력 변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군과 정부는 인구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병력 수요를 꾸준히 감축해 왔음에도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로 병역자원 확보가 쉽지 않음**.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비병력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연말병력***은 48만명임. 2002년 60만 명 대를 유지하던 연말병력은 2018년 50만명 대로 떨어졌고, **4년이 지난 2022년 50만 명 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짐**



* 연말병력이란 특정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실제 복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한다(「군 인력관리 훈령」 제2조제6호).

출처: KIDA,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2023.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에 따르면 **20세 남성**의 경우 **2022년 27만 3,000명에서 2072년에는 11만 2,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의 효율적 재설계와 안정적 병력 수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24.7.3.)

1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영여건

□ (현황)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고, 생계형 업종 중심

○ 자영업자 수(약 570만명)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22년): (韓)23.5 (佛)13.1 (日)9.6 (獨)8.7 (美)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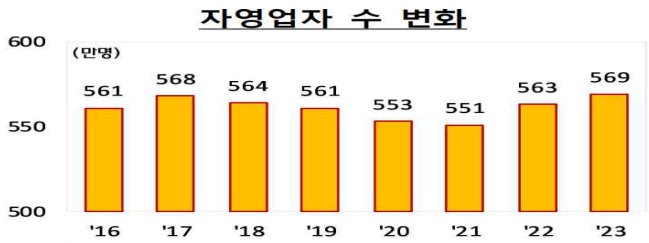
■ '23년 하반기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감소

* 전체 자영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3.7)9.2 (9)1.8 (11)0.3 ('24.1)2.9 (3)△3.6 (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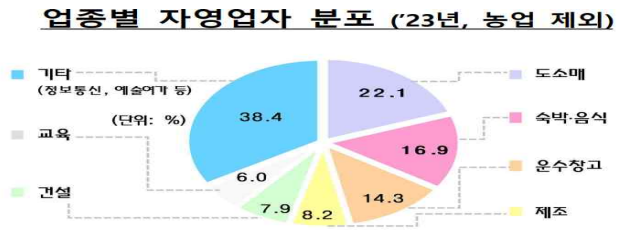
고용원 無 증감(만명, 전년비): ('23.7)4.4 (9)△2.0 (11)△7.8 ('24.1)△0.1 (3)△3.5 (5)△11.4

○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

* 창업 준비기간('22년, 개월): 숙박·음식 8.4, 도·소매 9.0, 교육서비스 11.5, 제조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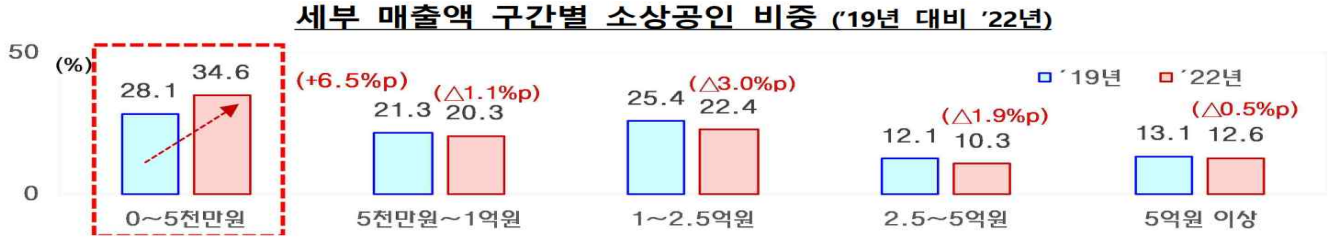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경영) 생계형 업종, 20~30대 중심 소상공인 여건 악화

○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증가('19→'22년+6.5%p), 中(△4.1%p)·上位(△2.4%p)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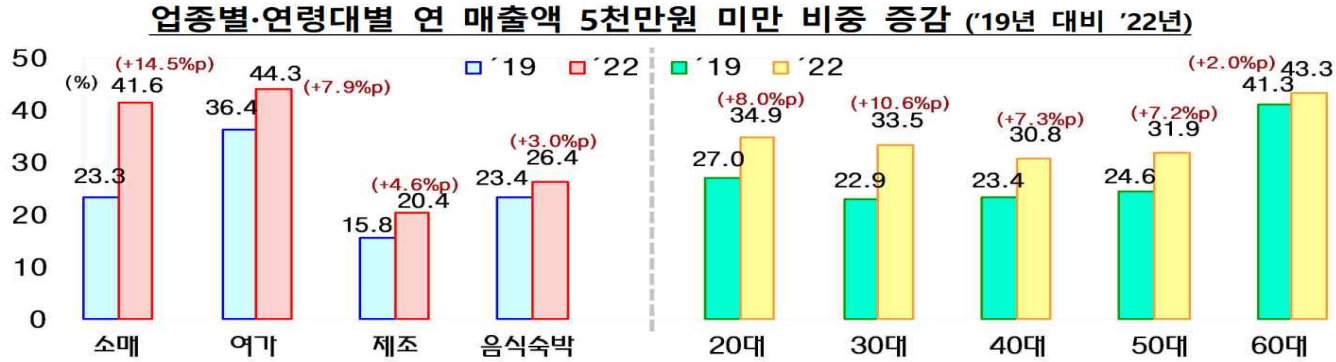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통계청), '22년 통계까지 활용 가능

※ '23년의 경우, ❶코로나19 정책지원 축소, ❷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상황 악화 가능성

■ 업종별로는 소매, 여가 등 생계형 업종, 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에서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 증가

*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층(20~30대) 비중(%): ('19년) 약 15.3 → ('22년) 약 21.7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통계청)

□ (부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출 증가, 최근 연체율 상승

○ 코로나19 대응 과정('20~'22년)에서 대출잔액·차주 수가 크게 증가*

* 대출잔액(조원) : ('19)686.1 ('20)803.5 ('21)909.2 ('22)1,019.8 ('24.1Q)1,055.9
대출차주(만명) : ('19)191.4 ('20)238.4 ('21)262.1 ('22)307.0 ('24.1Q)312.6

■ 영세·과밀업종*, 업권별로는 2금융권 중심** 증가

* 도·소매, 숙박·음식업 대출 비중(%) : ('17.4Q) 37.6 → ('24.1Q) 42.0

** 은행/2금융권 비중(%, '19년→'24년) : ('19.4Q) 72.7/27.3 → ('24.1Q) 62.5/37.5

○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21.4/4)0.5 ('22.4/4)0.6 ('23.4/4)1.3 ('24.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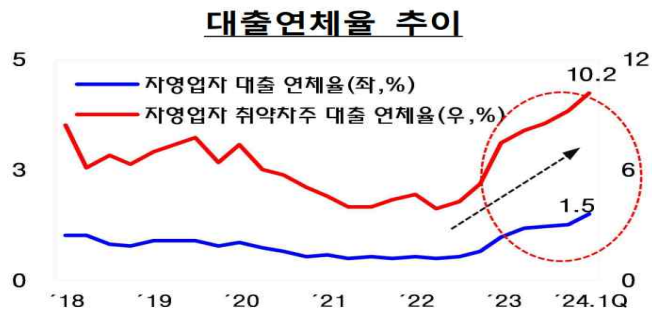
■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

*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이상)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약 40만명, '24.1Q)

**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 ('22.4Q)5.3 ('23.4Q)9.2 ('24.1Q)10



* 출처 : 가계부채DB (한국은행)



* 출처 : 가계부채DB (한국은행)

□ (폐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하고, 폐업공제금 · 실업급여 증가

○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3년 들어 상승 전환('23년 폐업자수 9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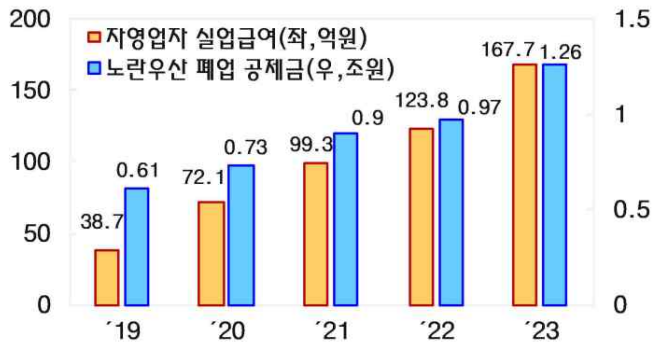
■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 출처 : 국세통계 (국세청)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



* 출처 : 중기부·고용부 자료

□ (환경변화) 스마트 · 디지털化, 온라인 쇼핑 · 배달 확대 등 환경변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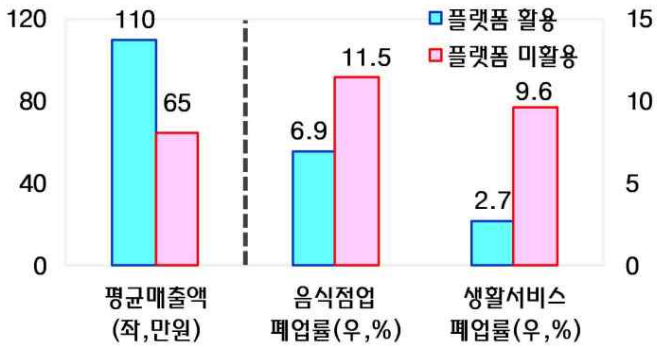
○ 최근 스마트·디지털化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두

■ 음식점업의 경우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매출액 등 경영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

○ 하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스마트·디지털化는 저조*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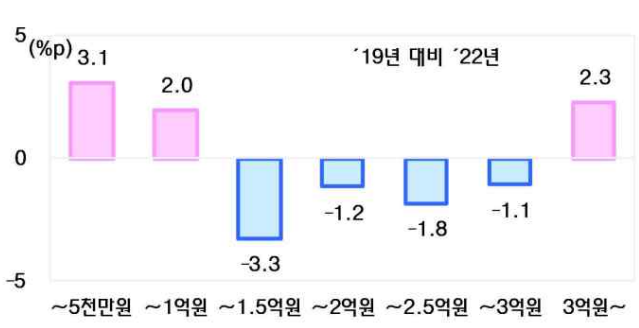
* '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 (소진공) :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 70%이나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율은 29%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액, 폐업률 비교



* 출처 : 신한카드 자료

음식점업 매출액 구간별 비중 변화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통계청)

2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

○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

○ 그동안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와 준비 부족으로 창·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

* 창업 전 창업교육 수행 비율 26.7%, 동일업종 재창업 비율 : 20.6%('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

◇ ❶취약계층 중심의 ❷충분한 지원과 ❸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추진

○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

* 비용증가 요인 응답(%):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에너지>18.2 <임차료>14.2 <대출상환>12.2 順 (한경협 자영업자 설문조사,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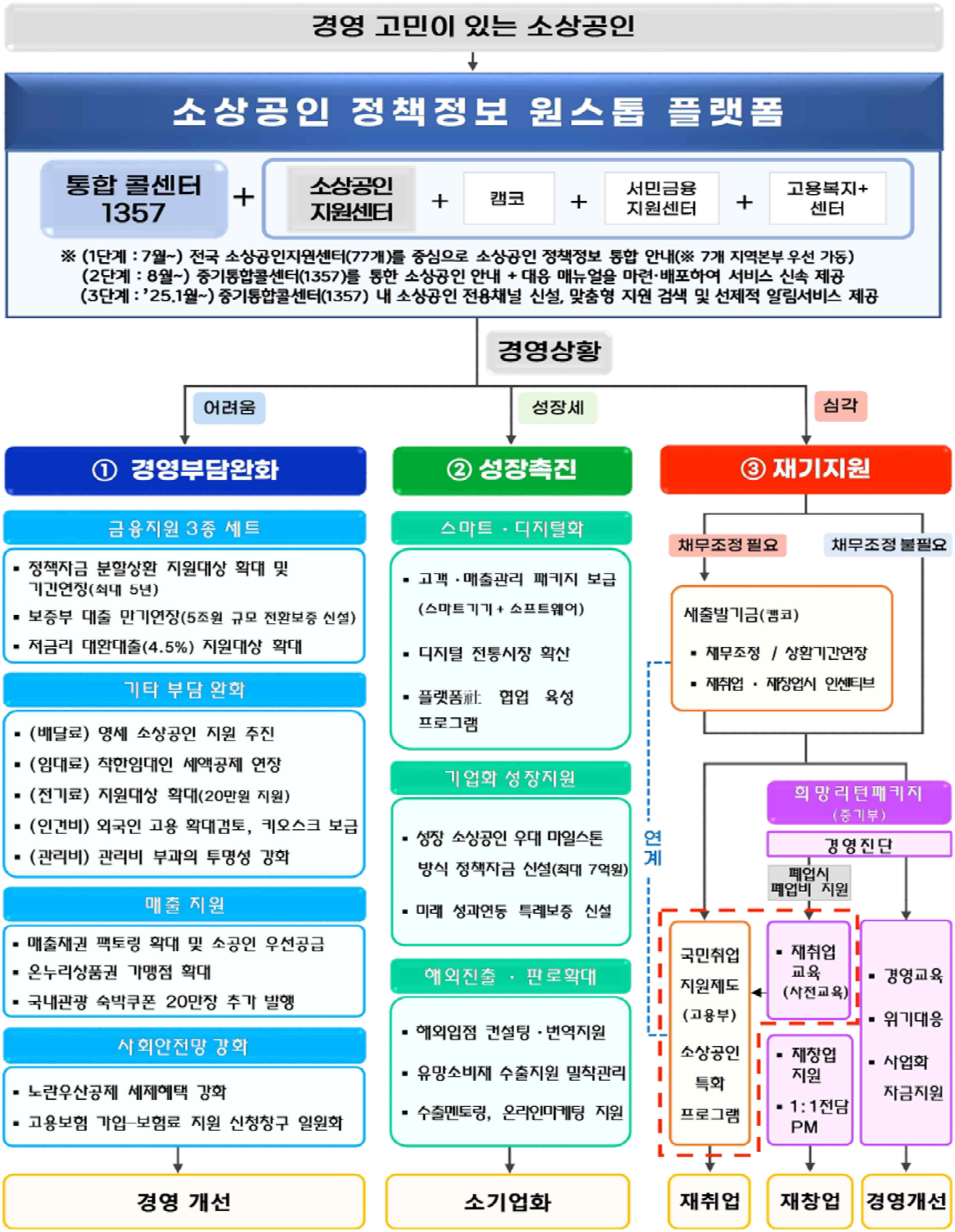
■ 특히,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 적극 추진

○ (성장촉진)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scale-up)을 적극 지원

○ (재기지원)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

■ 준비된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 뒷받침

3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4 향후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
1. 비용부담 완화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요건완화 및 가산금리 개선	'24.8~	중기부
► 5조원 규모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24.7~	중기부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24.8~	중기부
► 대환대출 프로그램온·오프라인 홍보	'24.7~	금융위
►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융자 금리 인하	'24.7~	농식품부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추가 공급	'24.7~	중기부
►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	'24.下	공정위,농식품부,중기부
► 영세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추진	'25.~	중기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25년말) 추진	'24.下	기재부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 연장(~'25년말)	'24.下	기재부
► 공공기관 자산 임대료 계약 특례 활용·지원	'24.下	기재부
►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24.7~	중기부
►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25.~	중기부
► E-9 비자 관련 외국인고용허가 범위 확대 검토	'24.下	고용부
► 상가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유도, 개선 검토	계속	법무·국토부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계속	법무·국토부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	'24.下	공정위
► 상생협력 등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상향	'24.下	공정위
► 사업장 정보중심의신용평가체계구축	'24.下	금융위·국세청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일부)	계속	국세청
► 비축물자 공급 대상확대	'24.下	해수·농림부
►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24→'26년) 추진	'24.下	국토부
►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5.~	중기부
► 소상공인 금전납부 의무 완화 등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24.8	법제처
►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	'24.7	기재부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25.~	기재부
► 노란우산공제무이자대출,납부유예인정사유확대	'25.~	중기부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24.下	고용·중기부
► 매출채권 팩토링 제한요건 완화 지원 확대	'24.下	중기부
► 매출채권 조기정상 유도 방안 검토	'24.下	공정위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축소	'24.9	중기부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정확대	'24.~	중기부
►카드형(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24.下	금융위
►명절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계속	농림·해수부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	'24.下	중기부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추가 발행	'24.下	문체부
►도시재생씨앗융자업종제한 완화	'24.下	국토부
►K-미식벨트 TOP30 조성	'24.下	농림부

2. 성장촉진 지원

► 민간기업 보유 경영정보 DB 활용 맞춤형지원	'25.~	중기부
►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계속	중기부
► TOPS 프로그램 운영	'25.~	중기부
► 소진공-중진공 연계정책 금융프로그램 신설 운영	'25.~	중기부
► 미래성과 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25.~	중기부
► 소기업 유예선택권 부여(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개정)	'24.下	중기부
► 향토기업 요건 완화	'25.~	중기부
► 해외쇼핑몰 입점컨설팅 및 제품현지화 확대 지원	'25.~	중기부
► 소상공인 유망 특화품목 수출 확대	'24.下	중기부
► 수출교육 멘토링 등 첫 수출지원 강화	계속	중기부산업부
► 동행축제를 판로·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	계속	중기부

3. 재기 지원

► 새출발기금 확대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24.9~	금융위
►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24.9	중기부
► 브릿지보증 전국 확대	'24.下	중기부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25.~	중기부고용부
► 폐업 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	'25.~	중기부고용부
►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	'25.~	중기부

운영체계 :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

► (1단계)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 중심 통합 안내	'24.7~	중기부고용부·금융위
► (2단계) 중기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안내 가동	'24.8~	
► (3단계) 소상공인종합지원 시스템 가동	'25.1~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❶취약계층 중심, ❷충분한 지원, ❸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자치도의 '24년 1월 자영업자 수*는 총 26만 8000명으로 1년 전(25만 9000명)보다 3.5%(9000명)가 증가했고, 26만 2000명이던 지난 2022년 2월과 비교해도 2.3%(7000명)가 증가했음

* '24년 2월 전북고용 동향, 호남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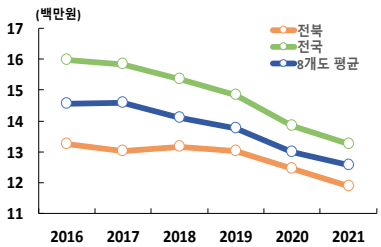
○ 또한 전북자치도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8*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년 0.55%, '21년 0.27%, '22년 0.3%, '23년 0.57%로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24년 1분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전북자치도 개인사업자 **사업장 평균 소득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폐업률은 2022년 기준 8.4% 수준**으로 나타났음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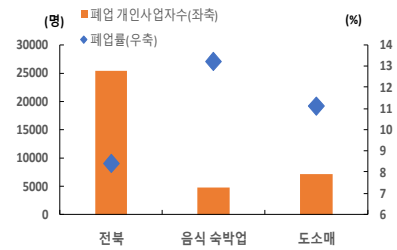
〈개인사업자 사업장 당 평균 소득〉



주: 1)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준,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2) 8개도 평균은 경기도 제외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높은 음식숙박업 및 · 소매업 폐업률

〈전북지역 자영업자 폐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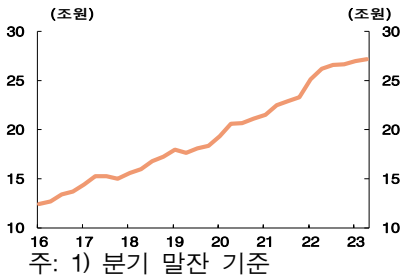


주: 2022년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부채 총량에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이 가세하면서, 전북자치도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약화**되었을 것으로 예상

최근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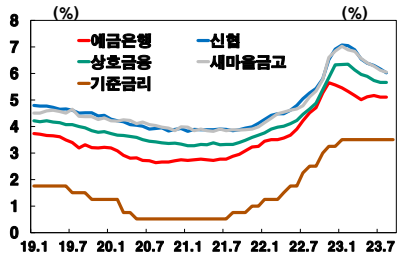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



주: 1) 분기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최근 대출금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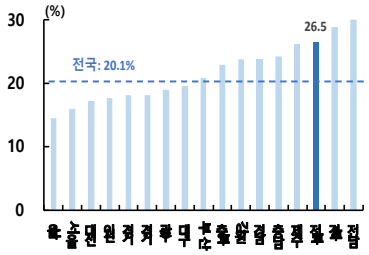
<기준금리 및 업권별 대출금리>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지역별 자영업자 비중>



주: 1) 취업자수 대비. 23.2/4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북자치도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4년 제1차 추경을 통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 개선 등) 및 지역상권 활성화(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전통시장 홍보·마케팅지원 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여부에 대한 실효성 분석**도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체계 구축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지방시대위원회)

◇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 심의·의결, 8개 시·도에 약 40.5조원 투자
◇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

1 추진현황

□ 정부는 '23.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음

□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24.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지정면적 크기 順)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24.6.20.)

<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



2 기회발전특구 특징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의 특구

□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루어짐

○ 실제로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제조업 外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하여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음

□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3 지정 현황

□ (경상북도)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

□ (전라남도)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을 지정

* 해남 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 확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 여수 내 일부 부지는 해당기업이 사업관련 인허가를 득(得)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평을 지정

□ (대구광역시)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평을 지정

□ (대전광역시)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평을 지정

* 유성구 내 방산기업이 유치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 (경상남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평을 지정

□ (부산광역시)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평을 지정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지방정부간 투자협약 주요내용 >

- 【대구 – ㈜엘앤에프】: 2조 5,500억원 투자,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 건립
- 【부산 - ㈜코스콤】: 2,300억원 투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데이터센터 구축
- 【대전 -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 및 후속 연구개발 투자
- 【경남 – SK오션플랜트㈜】: 약 1조원 투자,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 신설
- 【제주 – 한화시스템㈜】: 871억원 투자, 민간우주센터 조성 및 위성 제조·발사 등
- 【전북 – 효성첨단소재㈜】: 6,800억원 투자,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립
- 【경북 - ㈜에코프로】: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등에 투자
- 【전남 - ㈜포스코퓨처엠】: 1조 2,300억원 투자,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

<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사례 >

① 약 1조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A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7년간 약 1,500억원, 지방세는 5년간 약 120억원을 감면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약 150억원을 지원받아 총 1,770억원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② 약 1천억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B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7년간 약 60억원, 지방세는 5년간 약 20억원을 감면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약 130억원을 지원받아 총 210억원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 ❶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❷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❸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추진단]

○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를 기회로 기존 산업단지와 기업을 매개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임

*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3.7.10) : 지방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 다만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상황에서 부산의 문현금융지구가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향후 철저한 논리 개발과 기반 금융 산업 유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관련 설계가 **기존 지방세 감면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 감면 업종이 제한**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 이외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의 활용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인 바, 예컨대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에서도 투자지원금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나아가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재정지원 방안**으로서 **투자펀드 조성** 등 대책 검토가 시급함

○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지방 디지털 혁신 성장"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자치도는 철저한 준비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특구 지정**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참고1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8개 시·도)

지역(입지)		분야	면적(만평)	지정여부
경북	구미(구미국가산단 1~5단지)	반도체·이차전지·방산	57	지정
	안동(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단)	바이오	7	지정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영일만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77	지정
	상주(청리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11	지정
	경주(명계3 일반산단)	물류센터, 자동차부품	7	보완후 재심의
	영주(반구농공단지)	자동차부품	3	보완후 재심의
전남	광양(광양국가산단 동호안) 여수(율촌 제1일반산단) 순천(세풍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47	지정
	목포(목포신항 배후단지) 해남(해남 화원조선산단)	해상풍력 터빈 등	19	지정
	해남(기업도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단지	20	조건부 지정 (변전소 건설 확정)
	여수(묘도 항만 재개발사업지)	LNG터미널, 수소 생산·발전	34	지정
		▸ 일부 구역	2	조건부 지정 (사업허가 得)
	순천	문화콘텐츠	3.1	지정
	(순천만 국가정원)			
	(원도심 시민로)	▸ 일부 구역	0.4	보완후 재심의
	무안(무안 항공특화산단)	항공정비	3	보완후 재심의
		화합물 반도체	6	
전북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국가산단)	탄소섬유	29.9	지정
	익산(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첨단과학일반단지)	동물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21.7	지정
	김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 일반산단)	자동차부품, 특장차	36.9	지정
대구	수성구(수성알파시티)	데이터센터, ICT/SW	7.7	지정
	달성군(대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부품	64.9	지정
	북구(금호워터폴리스)	전기차·로봇 부품	10.1	지정
대전	유성구(원촌 첨단바이오혁신지구)	바이오	12.2	지정
	유성구(안산 첨단국방산단)	방산	48.1	조건부 지정 (GB해제 중도위 심의)
경남	고성(양촌·용정 일반산단)	해상풍력 구조물	47.6	지정
부산	동구(북항재개발 2단계지역) 남구(문현금융단지)	금융	22.7	지정
제주	서귀포(하원 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	9.1	지정

참고2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주요 내용 ('23.10.27 발표)

구 분	주 요 내 용
❶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❷ 취득·재산세	◆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❸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❹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❺ 양도소득세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크루즈 관광 및 지역관광·경제 활력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 4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선정, 이후 방한 관광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지자체, 관광공사, 항만 공사 등 기항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방한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연안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

*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과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 실시

○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발표 (6.17.)

2 주요내용

○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

○ **편하게 즐기는 크루즈 : 항만·관광 인프라 확충**

-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26년),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26년 잠정) 등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 크루즈**와 **익스페디션 크루즈*** **기항지 개발**을 추진

* 소형 크루즈선 (2만 톤 이하, 승객정원 200명 이하)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 등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고가 (1인 1박 $1,500 이상)의 크루즈 상품

- 이와 함께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반짝 시장 (팝업마켓) 운영, ▲24시간 무인 환전기 등 편의시설 및 터미널과 주변 지역 간 무료 순환버스 확충 등 기존 기반시설 개선 계획

○ **매력적인 크루즈 : 관광상품 고도화**

-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테마브랜드**(별첨 참고)를 **구축**
-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관광벤처 등 사업자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
- 국내 기항지 관광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 맞춤형 관광상품을 고도화하고 여행 플랫폼 등 유관 업계와 협업해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Fly & Cruise*)을 선제적으로 **육성**

* 공항으로 입국해 2박 3일 이상 국내관광 후 출항(모항) 또는 국내 기항지에서 승선해 일부만 여행에 참가(준모항)하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형태, 기존 4~5시간 기항보다 국내 체류 시간이 김

○ **더 많이 누리는 크루즈 : 유치 확대 및 홍보 강화**

-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항지 중장기 유치 활동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 유치 활동을 체계화
- 국제박람회 **공동 한국홍보관 운영**(문체부), **지역별 선사 미팅·지역협의체 활동**(해수부) 등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유치 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사 요청사항 공유, 내외 **유치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으로 협업
- 홍보 대상인 **국제 선사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관광 거점지사*를 활용한 상시 홍보 등 국내외 홍보활동도 강화

*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호주 시드니, 중국 상하이, 베이징, 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7개 지사

○ **쉽게 접하는 크루즈 : 산업 친화적 제도 개선**

-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항만 특전(인센티브) 강화를 추진, 지역 특산물의 크루즈 선용품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 회의(비즈니스 미팅)도 지원
- 안내원(가이드), 승무원 등 크루즈 전문인력을 양성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 역량도 강화
- 이와 함께 정부-기항지 관계기관-업계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세관·출입국·검역·보안 등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해양항만과]

□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 위　　치 :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신시도 ~ 비안도 구간)

○ 사업기간 : 2011년 ~ 2040년 (1단계 2011 ~ 2030년)

○ 사 업 비 : 3조 2,476억원 (재정 19,575억원, 민자 12,901억원)

○ 사업내용 : 부두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부지조성 451만㎡

○ 시행기관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1단계 사업 〉

- 사업기간 : 2011 ~ 2030년
- 사 업 비 : 2조 6,138억원(국비 18,321, 민자 7,817)
- 사업내용 : 부두 6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4.7km, 부지 304만㎡
  - '25년까지(1-1단계) 2선석 완공(방파제 3.5km, 호안 6.9km, 부지 136만㎡), 12,825억원

○ 추진 현황

-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 고시 : '10. 12.
- 1단계 방파제(3.1㎞) 축조공사 완공 : '16. 11.
- 1 · 2공구(진입도로, 매립호안, 가호안) 공사 착공 : '17. 12. ~
-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 고시 : '19. 08.

  * 부두규모 2~3만톤 18선석 → 5만톤급 9선석, 부두 (2선석) 재원 : 민자 → 국가

- 가호안 및 매립호안 (2.9㎞) 축조공사 완공 : '21. 02.
-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2. 07.

  * 물동량, 부두의 용도 및 규모, 개발시기 등 재검토 ('22.7. ~ '24.7.)

- 접안시설 (부두 2선석) 축조공사, 준설 · 매립공사 착공 : '22. 08. ~
- 1공구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완공 : '23. 04.

《 사업비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3년까지	'24년계획	'25년이후	비 고
합 계	32,476	8,229	1,628	22,619	'25년 2선석 완공
재 정	19,575	8,229	1,628	9,718	'30년 4선석 완공
민 자	12,901	-	-	12,901	'40년 3선석 완공
사업내용	부두 9선석 부지 451만㎡	방파제 3.1km 호안, 도로 등	호안, 진입도로 부두, 준설 등	부두, 진입도로 배후부지 등	

○ 2024년 계획

- 사 업 비 : 6개사업 1,628억원
- 사업내용

(준공 1) 북측방파호안 2차 1.6km

(계속 2) 접안시설 2선석, 항로 및 박지준설 41백만㎥

(착공 2) 방파제 축조공사 2차 250m,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 기초조사

(기타 1) 수리 · 환경영향조사 등

○ 금후계획

-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 '24. 12.
- 1단계 부두 2선석 주요 기반시설 완공 : '25. 12.
-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2선석 개항 : '26. ~

➡ 새만금 신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7대 기항지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 크루즈 관광의 경제 효과는 수년 전부터 강조됐음에도 후발주자인 전북 지역은 아직도 서류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짐

➡ 새만금 신항이 2026년 개장 시 제대로 된 모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과의 관광 연계 계획 수립, 관광 인프라 구축, 해외 선사들과의 협력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새만금이 크루즈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모항 방식 도입 등 정부의 'Fly&Cruise' 상품 육성에 발맞춰 2029년 완공될 새만금 신공항과의 연계 상품도 단계적으로 검토 필요

□ 부안 궁항 크루즈 기항지

○ 면 적 : 153,083m^2

○ 기 간 : 2021. ~ 2028.

○ 총사업비 : 99,500백만원 (민자 100%, 네오넥스 컨소시엄)

○ 도입시설 : 계류시설 80대, 방파제 280m 등

➡ '다모항 체인 크루징'을 목표로 부안, 칭다오, 인천시를 연계하는 크루즈 노선을 추진

➡ 부안군은 이미 크루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중국 크루즈 선사, 대만의 항만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부안군과 네오넥스 컨소시엄이 제출한 마리나항만 추진 계획에 대해 해수부는은 사업자의 자본금을 비롯 사업 계획이 미진하다는 의견이며, 이에 부안군과 해당 업체들은 이를 보완 ·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지금까지 나온 예상 사업비 900여억 원은 오로지 마리나항만 조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로, 추후 호텔과 콘도미니엄 조성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크루즈 입항을 성사시키기 위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구축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검토 필요

참고 7대 기항지 테마브랜드 전략도



6.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 부모가 자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일정에 대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24.6.27)

Ⅰ. 추진 배경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환경 조성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 중요

○ 유치원·어린이집의 장기간 이원화(법령, 제도, 관리 등) 체계로 인한 기관 간 차이 지속으로 균형있는 질 개선 제약

Ⅱ. 추진 경과

○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추진** 국정과제 설정('22.5.)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23.1.)

○ 유보통합 본격 논의를 위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23.4.)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23.7.28.)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23.7.28.)

*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중앙-지방 순차 이관

○ '**우선이행과제와 실천방안***' 발표('23.9.13.)

*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급간식비,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등 추진

○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 및 시행('24.6.27.)

Ⅲ. 추진 체계 및 전략

비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통합연수체계 마련
- 수요 맞춤 교육·보육프로그램 강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 교사 처우 개선 등
-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 설립·운영기준 마련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24년 100교 → '27년 3,100교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Ⅳ. 주요 내용

1 5대 상향평준화 과제

방향

▸ **'영유아 최우선'** 원칙 중심,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전이라도,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확산**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화** 추진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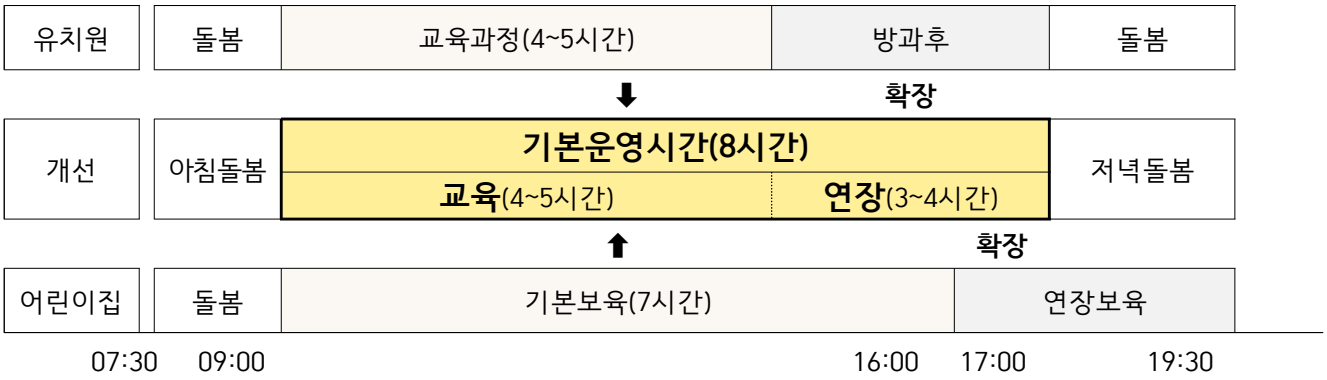
- **시도교육청**이 **시도/시군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보육 질 향상**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일원화**와 연계, **주요 사항 제도화**

주요 과제

과제	현재	목표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용 시간 차이*** * (유치원)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2시간 ✔ **방학기간, 휴일 돌봄 공백** 우려	✔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 *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 ✔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과밀환경*** 내 교육·돌봄의 질 저하 * (어린이집 기준) 0세1:3, 1세1:5, 2세1:7,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기준) 3세최대 1:24, 4세최대 1:26, 5세최대 1:28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 (0세) 1:3→1:2 (0~2세) 3학급 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12→1:8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 지속 * (사립유) 원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통합연수체계 마련	✔ **기관 간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 * (공립유) 매년 60시간 이상, (사립유)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 매 3년마다 40시간	✔ 교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 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연수 문화 조성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영아→유아, 유아→초등으로의 **단계적 이행 시 지원 미흡** ✔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체계 **미흡** ✔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 * ('24) 100개 내외 → ('25~'27) 매년 1,000개 추가 지정 ✔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및 **확산**	

1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❶ 기본8 + 추가4 이용 시간 보장



○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 8h)과 **맞춤형 돌봄**(아침+저녁돌봄, 4h)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돌봄 공백 해소**

❷ 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

현행		개선(안)
실제 운영일수		실제 운영일수
유치원	(병설) 연 227일, (단설/사립) 연 235일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약 70% 참여	방학 중 연장과정 100% 참여 보장 거점기관을 통한 주 6일 돌봄 - 신청 자격 단계적 폐지, 다만, 토요일 및 휴일은 학부모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거점)운영여부 결정
어린이집	연평균 275일* 운영 * 법정공휴일(18일)과 일요일(50일) 제외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비율 개선)**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0세반 **1:3→1:2**를 목표로 개선, 0~2세반 **보조교사 확대**(3학급당 1명→2학급당 1명), 3~5세반 평균 비율 **1:12→1:8**을 목표로 **과밀학급 해소 추진**

○ **(통합기관 기준 마련)** 교사 배치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화**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 결정

3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무상교육·보육 실현)**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 우선,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 향후 통합 모델과 연계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출

4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중점 연수)**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 추진

분야	내용
교육과정 실행	사립유·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역량 강화 지원
영·유아지원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성 강화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영유아 마음건강,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특별한 영유아지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요구에 대응

○ **(연수시간 상향)** 교사별로 다른(30-60시간)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27., 연 60시간)하고, 이에 따른 **연수 지원**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형태 다양화**

* ('25) 연 30시간 → ('26) 연 45시간 → ('27) 연 60시간

5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❶ 2·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 **(2세)** 2세 영아 대상 **기본생활습관, 신체운동 활성화, 놀이중심 교육·체험** 등을 확대하여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5세)** 놀이중심 언어교육 등 **문해력·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이음학기'**를 **운영**하여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25.~)

❷ 소규모 기관에서의 내실있는 교육 지원

○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래 상호작용** 촉진,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강화**

○ **(병설유치원 통합·연계)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 **인력배치·리모델링** 등을 지원, 단설 형태의 **'**가칭**한울타리유치원'**으로 개편('24.~)

○ **(늘봄연계)**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학교** 등을 중심으로 **유-초 연계 늘봄학교** 추진 및 점진적 확대('25. 1~2학급 병설 → '26. 3학급 이상 병설)

❸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 **(정서·심리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정서심리·발달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원·순회 검진** 등 지원

○ **(교사 역량 강화)** 영유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교사**의 **정서·심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상시 지원**

❹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통합지원)**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교육청 중심 선정·지원체계 일원화**('24.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통해 운영 → '25~'26. 확산 및 법령 개정)

○ **(교육인프라 확충) 유치원 특수학급**(매년 80학급, ~'27.)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신설**(매년 80개소, ~'27.)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접근성 확대**

○ **(특수교사 배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로 맞춤형 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 실현**

○ **(학부모 정보제공)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기 개입 실현

2 5대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과제

방향

▸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자율성** 보장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책무성 확보** 동시 추진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기준**을 **보완** 및 **확정**하고 **통합법 제정**을 통해 **시행**

▸ **기존기관**에는 전환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의 **연착륙 유도**

통합기관 개요

▸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

▸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도 일괄 부여**

※ 기존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예: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기한 내 설립·운영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행재정 지원 제외 검토

로드맵

▸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24)

* 통합기관 기준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24년 이후 후속 확정 추진

▸ 법률 등 개정 추진('25.~)

▸ 법 제정 즉시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세부 매뉴얼 등 마련

주요 과제

과제	현재	시안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통해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 모집하며, 점수제 적용	✔ (**입학**)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 통해 결정** -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 - **유치원 입학**은 우선모집·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 (**유치원교사**) 3~5세, 전문대학 이상 (**보육교사**) 0~5세,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학습기관 등 학점이수도 포함	✔ (**통합교원자격**) [1안]**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로 구분 ✔ ([신규]**양성**)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 ([현직]**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과정 운영**

과제	현재	시안
교사 처우 개선 등	✔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전국 동일(월 85만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지역별 상이(월 49~59만원)	✔ (**처우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근로자	✔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 (**유치원**) 3~5세 대상, 교육과정 (**어린이집**) 0~5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설립·운영 기준 마련	✔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지자체 및 사인(법인·단체, 조합 및 개인 포함)	✔ (**설립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 ※ 일부 유형(예: 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
	✔ (**유치원**) 3개 유형 * 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유형**) 10개의 유형을 **5개***로 **단순화** * 국공립, 사립(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 (**유치원**) 교사·교지 소유 의무 (**어린이집** 민간·가정) 임대·부채 인정	✔ (**재산요건**) **건물·토지 소유, 부채 불가** ※ 일부 유형(예: 가정형·직장형)에는 임대 제한적 허용, 기존 기관은 예외규정 적용
	✔ (**유치원**) 교실 유아 1인당 2.2㎡ (**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아당 1인당 2.64㎡	✔ (**교실 면적**) 교실 영유아 **1인당 3.3㎡** ※ 가정형에는 기준 완화,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유치원**) 내부 벽·천장 (**어린이집**) 내부 벽·천장·바닥	✔ (**불연재사용**) 내부 벽·천장·**바닥** 적용 ※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유치원**) 모든 유치원 체육장 의무 설치 (**어린이집**) 정원 50명 이상 기관 의무 설치	✔ (**실외놀이터**) 모든 통합기관 **의무 설치** ※ 일부 기관의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
	✔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어린이집**) 위험시설과 50M 이상 거리 유지	✔ (**입지요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청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 취학 전 (**어린이집**)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입학대상**) **취학전 아동**(0~5세) **원칙**, 기관 자율 **선택으로 연령·학급 운영** 가능
	✔ (**사립유**)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운영 (**그외**)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무 운영	✔ (**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설치 의무
	✔ (**유치원**) 자체평가, 평가주기 교육청 자율 (**어린이집**) 3년 주기 의무 평가	✔ (**평가·회계**) **장학·컨설팅**으로 개편, **회계·안전** 등은 **엄격** 관리
	✔ (**유치원**) 의무 규정 없음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의무	✔ (**CCTV**)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1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

○ **(신청창구 일원화)** 학부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가칭**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24.11.~)

○ **(상시입학제 도입)** 3월 모집 후 전산시스템상 상시입학이 곤란했던 유치원의 경우,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25.3~)

○ **(통합기관의 입학) 학부모 편의성** 제고 및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24.下~)

2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❶ 일반 교사

○ **(통합자격)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0~5세 보육	1안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유치원교사	3~5세 교육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 **(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 → 1급→ 원감 → 원장'**으로 개편

○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칭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원장)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취득 조건 부여 → **자격연수과정**(200시간 이상) 또는 교육부승인**대학원 통합과정** 등 이수

○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

현행		개편(안)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有)	➡	자격 신청	통합 교사 자격 취득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無) 유치원교사 자격(無), 보육교사 자격(有)	➡	특별교원양성과정① 또는 대학(원) 신편입 과정② 중선택	➡

- (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❷ (영유아)특수교사

○ **(자격)**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

○ **(양성)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한 **영아 특수교육 보완**(교직+특수교육+영유아교육 등 102학점 이상)

○ **(현직교사)**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3 교사 처우 개선 등

○ **(처우 개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재정 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추후 동일 수준** 지원

○ **(대체교사 확대)**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24. 1인 7일 → '27. 1인 10일)

○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

4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 **(원칙)**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정 간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 **(0~2세)**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및 **시행**('25.~)

5 설립·운영 기준 마련

❶ 설립 주체

○ **(원칙)** 통합기관 운영의 안정성·공정성·책무성 확보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법인**으로 **설립주체 한정**
단, 일부 유형(ex) 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

○ **(기존기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❷ 통합기관의 유형

<table>
<tr><th colspan="8">현행</th><th rowspan="2"></th><th colspan="5">개편(안)</th></tr>
<tr><td colspan="8">유치원
국립 | 공립 | 사립</td><td rowspan="2">국공립</td><td colspan="4">사 립</td></tr>
<tr><td colspan="8">어린이집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td><td>지정형</td><td>일반형</td><td>가정형</td><td>직장형</td></tr>
</table>

○ **(유형 단순화)** 현행 10개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되,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❸ 재산 요건

○ **(원칙)** 영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물과 토지 소유 및 부채 불가 등 **재산권 요건 강화**
단, 일부 유형(ex) 가정형, 직장형)에는 임대 제한적 허용

○ **(기존기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❹ 시설 기준

○ **(면적 기준 상향)**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기준**을 **3.3㎡로 상향*** 적용

- **가정형** 통합기관에 대해서는 **교실 면적 기준**을 **완화**(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포함)하고, **기존 기관**에는 일정 기간(ex) 10년)의 **경과규정** 적용

○ **(내부 마감 불연재 사용범위 확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내부**(벽·천장·바닥) **마감재 불연재 사용 의무 강화**

○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 모든 통합기관 설치 의무화**

- **일부 통합기관**(가정형, 5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

❺ 입지 요건

○ **(원칙) 안전한 교육환경** 및 **국민의 경제활동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 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❻ 운영 기준

○ **(입학대상) 취학 전 아동**(0~5세)이 기본이나, **특성 및 수요**에 따라 **기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연령·학급 운영** 가능

○ **(운영위원회)** 규모·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통합기관**에 **의무 설치**하고, **투명성** 및 **공공성**을 위해 **심의기구**로 운영

○ **(평가·회계)** 통제·규제적 평가에서 탈피,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컨설팅**으로 **개편**하고, 통합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회계·안전** 등을 **엄격 관리**

○ **(CCTV 설치) CCTV 설치·운영 방안**은 관련 전문가·단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추진**

3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방향

▸ 기관 간 차이 해소,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안정적 추진**으로 연착륙 도모
-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하여 수용성과 합리성 제고

▸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 마련

주요 과제

과제	현재	추진 내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중앙은 교육부로 일원화('24.6.27.) 지방은 기존 이원화 체제 지속 ※ (**유치원**) 시도교육청 소관 (**어린이집**) 시도·시군구 소관	✔ **의견수렴**거쳐 **이관 방안 확정** 및 **'24년 내 법률*** **일괄** 개정 *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 이관,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경과기간**을 두고 **철저한 이관 준비**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 별도 산정·활용 ✔ 유치원-어린이집 간 상이한 비용지원구조 ✔ 복지부 국고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된 국고 지원	✔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산정·활용 ✔ **비용지원구조** 개편·통합 ✔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치원**) 교육청 중심의 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중앙부처 중심의 관리시스템	✔ 통합기관 출범 대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통(~'29)

1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2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산정) 국가가 목표하는 서비스 질 수준**을 고려하여 가칭**표준영유아교육·보육비용** 설계

- **개념 재정의, 구성항목, 항목 산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통합기관**의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표준비용 산정**

○ **(비용지원구조 개편) 기관 유형, 수요자 선택권, 기관 자율성, 서비스 질 제고**를 고려하여, **통합기관 유형별 지원구조 개편 검토**

○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이원화 구조**(유아교육특별회계, 복지부 국고)의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단기)** 관리체계 일원화, 통합모델 전면 시행 전 **제도 개선과제에 따른 기능개선 수요** 등을 반영한 **현행 시스템 각각 개선·운영**

○ **(중장기)** 통합법 제정·시행 지원을 위한 가칭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24.下.~)
-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24.) 및 법률 등 개정 추진('25.~)
-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24.)

구분		'24.下	'25	'26	'27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이용시간/일수	(유) 1일 8h (어) 1일 12h	1일 기본8h+추가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세) 1:3	(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3~5세) 평균 1:12	과밀학급* 해소 * 예 (3세반) 1:13초과, (4세반)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3~5세) 평균 1:8 목표
	교사연수	(공립유) 연 60h			
		(사립유) 연 30h (어린이집) 3년간 40h	연 30h	연 45h	연 60h
	프로그램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	4세 무상	3세 무상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입학방식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유치원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용)		
	통합교원 자격·양성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교사 배출('31)
				현직 교사 통합자격 취득	
	처우개선	실태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	처우개선 방안 시행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개정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적용	
			관련 법령* 제개정, * 국교위법 개정 등		
	설립·운영 기준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통합법 제정 추진·시행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	관리체계 일원화	이관 법률 개정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규정 정비 등 이관 추진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표준비용 기초연구		통합비용 결정 및 적용	
		비용 지원구조 설계		법령 등 개정 및 적용	
	통합정보 시스템		BPR/ISP		시스템 구축(~'29)

※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유초등특수교육과)

○ 교육청은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2024.1.1. 유초등특수교육과 내에 **유보통합팀을 구성**, 현재 총 12명(교육청 10명, 전북자치도청 파견 2명)이 **기본계획 수립, 선도교육청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담당한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정원·인력·예산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이관 시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2024.1.18.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타 시도와 차별되는 **특례 발굴** 및 **상호 협력**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유보통합을 위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가 주요 내용 유보통합 모델 발굴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가칭 영유학교 시범사업을 100개 내외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매년 1,000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임

○ 유보통합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유치원 교사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통합자격**에 대해 **교육부**는 **1안(0~5세 담당 영유 정교사), 2안(0~2세,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구분)**으로 **개편안**만 **제시**하고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계획

○ 유보통합에 따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시설·환경개선, 추가 교사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추가 재원 확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이 필요**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충청북도)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의결

1 제안 이유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질평가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 기질평가위원회의 소집 (안 제6조)
○ 회의록 작성 (안 제7조)
○ 기질평가비용 등 (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3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 조정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를 위한 심의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시사가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위원회 소집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소집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지역의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제8조(기질평가비용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② 기질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안전조치 등) 위원회는 기질평가 수행 시 평가위원과 평가진행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형성하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4년 4월 27일 이후 시행**되었음

○ 맹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며(「동물보호법」 제10), 기질평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제5호)하고 있어 올해까지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질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도 '24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맹견 기질평가 예산(43,420천원)을 편성하였음

○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동물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3제4항)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함

○ '24년 6월 현재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맹견은 162마리(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였으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참고 맹견 현황

1. 맹견 등록 및 보험가입 현황

년도	구분	등록 맹견 수	보험가입 건수	가입비율
2024년 6월	**전국**	**2,631**	**-**	**-**
	전북	**162**	**160**	**98.8%**
2023년	전국	2,849	1,922	67.5%
	전북	162	161	99.4%
2022년	전국	2,665	1,541	57.8%
	전북	130	128	98.5%
2021년	전국	2,736	2,135	78.0%
	전북	139	118	84.9%
2020년	전국	2,269	1,742	76.8%
	전북	59	53	89.8%

*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식품부 조사자료

2. 시·군별 현황

구분	맹견등록		보험가입		가입율	비고
	소유자 수	맹견 수	소유자 수	맹견 수		
계	**43**	**162**	**41**	**160**	**98.8%**	**미확인 2**
전주시	9	54	9	54	100.0%	
군산시	4	7	4	7	100.0%	
익산시	5	22	5	22	100.0%	
정읍시	3	19	3	19	100.0%	
남원시	2	2	2	2	100.0%	
김제시	2	16	2	16	100.0%	
완주군	4	5	4	5	100.0%	
진안군	7	10	6	9	90.0%	연락두절1
무주군	2	2	2	2	100.0%	
장수군	1	20	1	20	100.0%	
임실군	-	-	-	-	-	
순창군	1	2	1	2	100.0%	
고창군	2	2	1	1	50.0%	연락두절1
부안군	1	1	1	1	100.0%	

*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시군 조사자료

2.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경상북도)

◇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1 제안 이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산업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청년이나 고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차별적 요인이 상존하며 이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도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관련 경쟁력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에 대해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중장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4조)

○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영농형태 및 영농경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3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이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전북자치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고령농업인의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임.

<농업인 유형별 연령 적용 요건>

구 분	법적근거	연령요건
후계농업인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40세 미만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4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	**조례안**	**45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농업인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65세 이상**

○ 농업 및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전북자치도에서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장년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후변화, 특정 농작물 편중에 따른 소득감소, 작목전환 등 농업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 재배기술 교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할 수 있음

○ 현재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시행, '24.1.10.**),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시행, '24.5.23.**), 기초지자체는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시행, '24.7.2.),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시행, '24.6.28.)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장년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3. 지방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율 분석(나라살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율 현황 및 제언

1 분석 이유 및 기준

○ 각종 법령은 조례에 그 내용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조례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하고 있음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발생하는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과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임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 (https://www.law.go.kr/ordinDelegationSc.do?menuId=3&subMenuId=29&tabMenuId=149&query=)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하는 조례를 의미함

○ 자치단체 조례로 해당 법령의 내용을 위임하도록 한 필수조례는 정책 및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실현되기 위함임

2 분석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역단위계는 해당 지역 내에 속한 모든 자치단체 내의 필수조례 정비대상을 합산하여 지역단위계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지역단위 필수조례 정비율 현황>

순위	지역 단위	정비완료	정비대상	정비율 (2024.07)	순위	정비율 차	정비율 (2022.07)	순위
1	제주특별자치도	498	580	85.9%	-	1.6%	84.3%	1
2	경상남도	4,488	5,234	85.7%	△1	6.8%	78.9%	3
3	경기도	7,653	8,985	85.2%	△2	6.8%	78.4%	5
4	강원특별자치도	4,339	5,099	85.1%	△3	8.1%	77.0%	7
5	충청남도	3,718	4,376	85.0%	▼1	6.3%	78.7%	4
6	충청북도	2,754	3,297	83.5%	△2	6.5%	77.0%	8
7	전북특별자치도	3,410	4,106	83.0%	▼1	5.6%	77.4%	6
8	전라남도	5,107	6,159	82.9%	△1	6.0%	76.9%	9
9	세종특별자치시	370	447	82.8%	▼7	1.8%	81.0%	2
10	경상북도	5,113	6,218	82.2%	-	7.4%	74.8%	10
11	대전광역시	1,086	1,332	81.5%	-	7.4%	74.1%	11
12	광주광역시	1,085	1,341	80.9%	-	6.9%	74.0%	12
13	서울특별시	4,105	5,087	80.7%	△2	8.0%	72.7%	15
14	인천광역시	1,773	2,213	80.1%	▼1	6.7%	73.4%	13
15	울산광역시	1,054	1,330	79.2%	▼1	5.8%	73.4%	14
16	대구광역시	1,666	2,126	78.4%	-	6.8%	71.6%	16
17	부산광역시	2,593	3,316	78.2%	-	6.9%	71.3%	17
합계		50,559	60,943	83.0%	-	-	-	

○ 이에 따라, 2024년 7월 6일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단위(각 지역별 본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의 합)을 살펴보면 83.0%의 필수조례 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서 6.9%p가 증가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계속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이전 조사와 같이 17위를 기록했음

○ 이전 조사때에 비해 강원도가 3위가 상승해서 4위를 나타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7위가 하락해서 9위로 나타났음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지난 조사때보다 모든 자치단체의 정비율이 상승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8.1%p가 늘어나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서울특별시가 8.0%p,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가 7.4%p 순으로 증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5.6% 증가했음

<광역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율 현황>

광역자치단체명	2022		2024		순위변동	정비율 차
	정비율	순위	정비율	순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84.3%	1	85.9%	1	-	1.6%
인천광역시 본청	79.6%	3	83.4%	2	△1	3.8%
대구광역시 본청	79.1%	4	83.3%	3	△1	4.2%
대전광역시 본청	78.5%	6	83.3%	4	△2	4.8%
광주광역시 본청	78.3%	7	83.2%	5	△2	4.9%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81.0%	2	82.8%	6	▼4	1.8%
부산광역시 본청	76.8%	9	80.9%	7	△2	4.1%
서울특별시 본청	78.9%	5	80.7%	8	▼3	1.8%
울산광역시 본청	76.7%	10	79.3%	9	△1	2.6%
충청남도 본청	75.8%	13	79.0%	10	△3	3.2%
경기도 본청	77.7%	8	78.7%	11	▼3	1.0%
전라남도 본청	76.0%	12	78.2%	12	-	2.2%
경상북도 본청	74.6%	15	78.1%	13	△2	3.5%
경상남도 본청	75.1%	14	77.1%	14	-	2.0%
충청북도 본청	68.2%	17	75.6%	15	△2	7.4%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72.4%	16	75.3%	16	-	2.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76.5%	11	73.1%	17	▼6	-3.4%
평 균	77.0%		79.1%			2.9%

○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 조사와 같이 가장 정비율이 높았으며, 강원도 본청이 6위가 하락하여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하락도 큰 편이었음

○ 이전 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정비율은 77.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9%가 늘어난 79.9%였으며, 전북자치도는 2.9% 증가

○ 충북 본청이 이전 조사보다 7.4%p가 상승해서 가장 많은 정비율차를 나타냈으며 광주 본청(4.9%p), 대전 본청(4.8%p), 대구 본청(4.2%p)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강원 본청은 유일하게 이전 조사보다 정비율이 하락한 광역자치단체였고 경기본청(1.0%p)과 제주 본청(1.6%p), 세종 본청과 서울 본청 (1.8%p)도 낮은 정비율의 상승을 나타냈음

3 시사점

○ (**필수조례 정비 노력 필요**) 필수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필수조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 즉, 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기존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하거나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필수조례 정비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들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향상되었는데 지속해서 법령개정 사항을 점검해서 필수조례 정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특히, 올해는 전반기 지방의회가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지방의회가 개회되시는 시기에 **지방의회는 필수조례의 정비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함

○ 또한, 자치단체들은 필수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법무담당 부서의 주요 업무로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관리해야 함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필수조례 정비의 정교화 필요**) 자치단체의 입법정비에 있어 주무부처인 법제처는 2023년 12월에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치의 입법자율성 제고를 위해 122개 법령 정비를 진행했는데 지속적으로 필수조례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정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법무행정과]

○ 전북자치도본청 기준 **필수조례 정비율은 16위**이나 강원자치도가 금번 강원특별법시행('24.6.8)으로 필수조례 정비율 목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전북자치도의 정비율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필수조례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규범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북자치도는 올해 전북특별법 시행('24.12.27)을 앞두고 있는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필수조례 정비율은 더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24년 7월 현재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례는 53건으로 이 중 16건이 정비되어 37건(70%)의 조례가 제정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어, 향후 철저한 대비와 정비를 통하여 **필수조례 정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별 필수 조례 제·개정은 **기획행정위원회-6건, 농업복지환경위원회-6건, 경제산업건설위원회-6건, 문화안전소방위원회-2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일부 필수정비 조례**의 경우에는 **제·개정이 완료**되었으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참 고 필수조례 정비 현황(미개선 목록-전북특별자치도 본청 2024.0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조례	위원회	비고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2017.3.21		기획행정	조례 제정 검토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조례 개정 검토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2024.1.18	현행 규칙	기획행정	조례 제정 검토
4		제16조(주민참여 예산제도)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기획행정	조례 개정 검토
5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2017.7.26		기획행정	조례 제정 검토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2022.1.13		기획행정	조례 제정 검토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녹화계획)	2017.10.19		농복환	조례 제정 검토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022.6.2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농복환	조례 개정 검토
9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2022.6.22		농복환	조례 제정 검토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2017.7.26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농복환	조례 개정 검토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2020.6.4		농복환	조례 제정 검토
12	지하수법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2017.7.26		농복환	조례 제정 검토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2022.3.1		경산건	조례 제정 검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2022.3.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2024.1.19		경산건	조례 제정 검토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과태료)	2017.11.25		경산건	조례 검토 (타시도 조례 없음)
16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017.9.22		경산건	조례 제정 검토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2013.6.19		경산건	조례 제정 검토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2023.9.29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경산건	조례 개정 검토
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2017.6.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안소	과태료 규정 검토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024.5.17		문안소	조례 제정 검토
		제15조(지정의 해제)	2024.5.17			
		제17조(허가)	2024.5.17			
		제17조(허가)	2024.5.17			
		제17조(허가)	2024.5.17			
		제21조(신고)	2024.5.17			
		제21조(신고)	2024.5.17			
		제21조(신고)	2024.5.17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2024.5.17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2024.5.17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2024.5.17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2024.5.17			
		제28조(정기조사)	2024.5.17			
		제40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2024.5.17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연번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조례	위원회	비고
2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022.12.27		본청	규칙 제정 검토
22	교육공무원법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2016.8.4		기획행정	공립 대학 없음
23	동물위생시험소법	제6조(소장 등)	2023.12.1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4.5.31)
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4.5.31)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4.7.5)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조례제정 ('23.12.8)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024.1.18			
		제18조(감사위원장)	2024.1.18			
		제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2024.1.18			
2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2017.7.26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2.11.11)
28	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2023.1.1	전북특별자치도세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3.11.1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23.3.14	전북특별자치도세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17.12.29)
30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22.1.13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2.3.11)
3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2022.7.5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3.12.8)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2022.7.5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2022.7.5			
32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2016.12.2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기획행정	조례개정 ('24.7.5)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2018.6.20		농복환	도관리 공설묘지 없음
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023.7.19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농복환	조례 개정 ('22.4.15)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2017.6.3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농복환	조례 제정 ('22.12.9)
3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2023.4.27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농복환	조례개정 ('24.5.31)
3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024.7.26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복환	조례제정 ('21.2.19)
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비용의 부담)	2016.12.30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농복환	조례 개정 ('23.12.8)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2018.2.10		경건위	개발제한구역 없음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2022.1.28		경산건	시·군 조례 제정
4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2023.3.21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산건	조례 개정 ('23.12.8)

연번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조례	위원회	비고
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2018.4.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경산건	조례개정('23.12.8)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017.7.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경산건	조례 개정('23.12.8)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21.4.27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2021.7.13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2024.1.19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경산건	조례 개정('24.5.31)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019.10.24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2024.1.19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2021.7.14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2021.7.14			
4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2023.10.19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산건	조례개정('22.11.11)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2023.10.19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2023.10.19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2023.10.19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2023.10.19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2023.10.19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2023.10.19			
46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2022.12.8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문안소	조례 개정('23.5.8)
4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2024.5.17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안소	조례개정('23.12.8)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023.8.8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문안소	조례개정('23.12.8)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024.5.17			
		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2024.5.17			
48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2017.7.2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안소	조례제정('23.12.8)
4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2022.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운영위	조례개정('23.8.16)
		제11조(이의신청 등)	2022.1.13			
50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022.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운영위	조례개정('23.12.8)
5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2022.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운영위	조례개정('23.12.8)
5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2022.1.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운영위	조례개정('23.12.8)

4.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광주광역시)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함

1 추진배경

○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대　　상) 초등학교 전학년 학부모

○ (지원규모) 중소사업장 근무 초등학부모 직원 300건(1학년 통합)

○ (지원금액) 2억 2,400만원(≒748,000원*×300건)

* 1인당 장려금 총액 : 748,000원=2개월×374,000원**

* * 374,000원=10시 출근으로 줄어든 업무시간 1개월간 손실분을 산정

○ (지원기간) 2개월 간

○ (지원내용)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 학부모 직원은 1시간씩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 및 퇴근시간 단축 : 1시간 업무단축)

○ (지급방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 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74만 8000원을 지원

3 기대효과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근무 여건 조성

○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걱정 해소 및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의 부담 감소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기업애로해소과)

○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음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사업 》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함**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함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함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 도모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24년 6월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지역인재 유출·이탈을 방지하고, 업무대행자 직접지원을 통해 대행근무 동기 부여 및 도내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사업내용 :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업무대행자 수당(1인, 5개월, 3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150만원(5개월x30만원) 수당 지급, 1기업 당 업무대행자는 최대 1명으로 제한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업체(200인 미만)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 근로자 40명

○ 사업기간 : 2024. 6 ~ 12월 / ○ 사업예산 : 70백만원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4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업 시행 후 환류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다면, 대상 범위의 확대 등 사업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24. 4월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등을 통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이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중소기업 재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육아기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 대한 재택·단축 근무제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 1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공고

○ (지원방법) 초등학부모 해당 직원이 있는 중소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접수방법) 광주광역시 아이키움 통합포털 이용 (신청서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
▶ `24년 현재 초등학교(1~6학년) 학부모 (남녀구분 없음)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재학 중이며 학부모 또한 광주광역시 거주 (주민등록 등본거주 확인)

○ (지원가능)

▶ 기간제 직원, 대체인력 직원 가능 (6개월 미만 근속자도 가능)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가능
▶ 맞벌이 부모교차지원
-부모 동일사업장 근무 시 : 부모교차지원가능 (2개월 엄마→2개월 아빠, 엄마·아빠 동일시간 가능, 오전·오후 교대 가능)
-부모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동시지원가능 (2개월 동시 엄마 아빠사용가능)
▶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5시조기퇴근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기준 1시간 단축 (오전, 오후 30분씩 단축가능/ 단 연장수당은 보상이 되지 않음 / 회사별 특수 업종,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의료종사자, 사업장상황 등)
▶ 특수고용자 예외적 가능 : 보험설계사, 예술가, 학습지교사, 백화점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로 일하나 사업장의 시간 관리를 받을 경우, 소속사업장 관리확인 필요, 별도 서류 첨부-용역계약서, 활동증명서등)
▶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나 광주광역시에 종된 사업장 및 지사, 영업소 등으로 분류되면 가능 (본사가 300명이상, 지사 20명⇒신청가능)
▶ 1개사업장 최대10건까지 지원가능 : `24년 6월 이전 지원건수 포함, 한자녀당 2개월
※ 기타 지원사항 등은 고용노동부 모부성지원제도의 시행령 등을 준용할 예정

○ 제외대상

▶단시간 직원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공무직 및 공공근로제외, 자활제외,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일생활경험, 인턴사업 등)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 중복으로 제외 (단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면 가능)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제외
▶1인 1사업장 대표는 제외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족제외 (시간관리 가능한 것으로 전제, 단 대표가족이나 동거하지 않는 고용보험가입 가족은 가능)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 지원금 사용자 제외



참고 2 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공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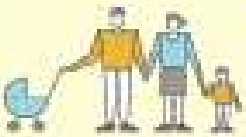
사장님!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으로 업무공백과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드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근로자



업무공백이 부담되고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여져요

사업주



단축근로자 관리도 어렵고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부담됩니다

* 출처: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대한 근로자 설문조사('22.4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3.12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되었어요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원금액 15만원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원금액 20만원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예시 업무분담자를 '24.7.1 지정한 경우 7~9월분 지원금은 '24.10.1 이후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때만 제출,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때 추가 제출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5. 신혼(예비)부부에 '천원주택' 파격 공급(인천광역시)

◇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추진**

1 추진배경

○ 인천광역시 내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 요)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

○ (지원대상)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공급규모)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 매입임대 :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는 것

** 전세임대 :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

※ 전세임대지원금 : 최대 보증금 2.4억원(초과 시 자부담)

○ (지원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 (공급기준) 무자녀 65㎡이하, 1자녀 75㎡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

※ 인천광역시는 '천원주택' 공급 사업에 더불어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함

《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정책 개요》

○ 개 요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5년 이후 출산 가구

- (공급규모) 총 15,000호(연간 3,000호, 5년간 시행)
- (지원내용) 대출상한 3억원(초과시 자부담)
- (지원금리) 1자녀 0.8%, 2자녀 이상 1.0%
- (지원금리)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장 5년

※ 소득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3 기대효과

○ 집값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 완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주택건축과)**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 사업'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구분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 사업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 금리	연 2.15% ~ 연 3.25%	1.6 ~ 3.3%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전북자치도는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2026년(4개년)

○ (사업비) 800억원(도비 320, 시군비 480)

○ (사업규모) 4,000가구

- (23년 실적) 318가구 59억원 지원 ※ '23년 잔여물량 307가구 66억원
- ('24년 계획) 438가구, 87.5억원(도비 35, 시군비 52.5)

○ (사업대상)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 부부 및 미혼청년*

* '24.1.1.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및 만 18~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

○ (사업내용) 본인부담 계약금(10% 이내)외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융자)**

- 전액 무이자로 지원(융자)하며,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지원기준

○ (지원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자

- (대상주택) 시·군 및 LH·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 (지원기간) 최초 2년(1회), 추가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

◇ **자녀수**(신청일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 지원**(※ 시행규칙 개정 예정)

-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최대 10년)

○ (지원방법) 도와 시·군이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종료 후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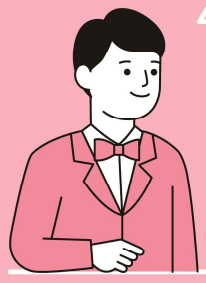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주택을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하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23년 318가구)이 제한적임.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인천광역시의 '천원주택' 사업 및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처럼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정부의 대출금리 이자 감면에 더하여 이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참고 전라북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융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지원내용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조건

최장 10년(2년,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가구 4회 연장(최대 10년)

신청기간

'23. 4. 17. ~ 5. 4. 18:00 까지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주택담당부서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 280-2368	익산시 | 859-4488	김제시 | 540-3269	무주군 | 320-2486	순창군 | 650-1771
전주시 | 281-2445	정읍시 | 539-8202	완주군 | 290-2873	장수군 | 350-2296	고창군 | 560-2385
군산시 | 454-4242	남원시 | 620-6587	진안군 | 430-2475	임실군 | 640-2284	부안군 | 580-4885



전라북도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

<< 분석요약 >>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과 합작 투자한 기업의 지분조정이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고 연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지원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고 밝힘

◇ 실제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 개발청에 5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계획을 연기했고,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시기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7월) 등에 힘입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새만금은 도시의 주요 기능별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권역별로 기능에 따라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를 비롯하여 전기차, 부품(자동차 · 조선 · 기계), 첨단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업의 시설이 입주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가동 중임

○ 새만금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가운데 여러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로 국가산업단지의 5, 6공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새만금은 전구체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가공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공급망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77개이며 총 투자유치금액은 14.8조원에 달함. 그중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22개로 현재 8개 기업이 공장 착공에 돌입하였고 3개 기업은 현재 공장을 가동 중임. 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2023.6월) 등으로 인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 · 강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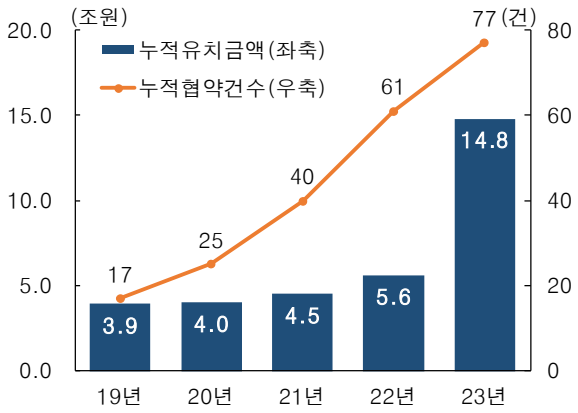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기업부지 현황



자료: 전북특별자치도(2023)

○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이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여건은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여지가 있음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현황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 분야별 투자기업 현황(2023.12월 기준)

구분(개)	주요 내용
양극재(13)[2]	LS-엘앤에프, LS MnM, ㈜GEM코리아, 미래나노텍, ㈜에코앤드림, ㈜배터리솔루션, 룽바이, ㈜동명기업, 에스이머티리얼스㈜, ㈜리튬포어스, ㈜하이드로리튬, ㈜LG화학, 백광산업
음극재(2)	대주전자재료㈜, 에이원신소재
전해질(4)	㈜이디엘, ㈜천보BLS, 이피캠텍㈜, ㈜덕산테코피아
리사이클링(2)	성일하이텍㈜ Ⅰ, Ⅱ
기타(1)	㈜테이팩스

주: 1) 밑줄 친 기업(8개)은 착공, 파란색으로 표시한 기업(3개)은 현재 공장 가동중
2)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생산을 포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미국 IRA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해 핵심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작년 4월 발표된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나 음극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새만금의 경우 양극재 등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으로 인해 중국과 합작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은 지분조정이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요인도 존재함

미국 IRA의 배터리 요건(2024년 기준)

핵심광물 요건	부품 요건
■ 광물 총부가가치의 50% 이상을 북미나 美FTA체결국에서 생산	■ 부품 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북미나 美FTA체결국에서 생산
■ 배터리 주요 소재(양극재 등)의 제조과정을 광물가공으로 인정 (추출 또는 가공시 요건 충족)	■ 부품 범위를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셀, 모듈로 정의 (양극재 등 구성재료는 불포함)

자료: 미국 재무부

EU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의 주요 내용

규 정	내 용
탄소발자국 신고제 (2025~)	■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신고를 의무화
재활용 원료사용 의무화 제도(2031~)	■ 배터리 핵심광물(리튬, 니켈 등)의 일정 비율만큼 재활용을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 (2026~)	■ 배터리의 생산·사용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기록

자료: EU 집행위원회

○ 한편 EU에서는 금년 2월부터 배터리법이 시행되면서 탄소발자국 신고제, 재활용 원료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의 친환경 규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들은 중국에 비해 친환경 분야의 경쟁력이 우수하여 유럽시장에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향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대외여건을 바탕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2024.1월)함에 따라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 만큼, 이차전지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특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국회입법조사처) ('24.6.)

<< 분석요약 >>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23년 제정된 지방분권균전법을 통해 도입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활용할 수 있음

□ 분석배경

○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세·지방재정 측면**의 지원 방안 제시

□ 주요내용

《문제점 분석》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관련 설계가 **기존 지방세 감면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 감면 업종이 제한**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 이외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의 활용이 미흡

《해결방안 제시》

○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 또는 특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고려, 지방세 감면 업종에 **친환경 업종** 추가 검토 등,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준** 확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 마련,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세부내용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재정금융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한정적인 지방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첫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업에 대한 취득·재산·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과 거의 유사하며,

둘째,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국세)의 세율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25년부터)이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세율 인하 등은 없는 상황이고,

셋째, 현행 법령상 기회발전특구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이어야 가능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등

○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구체성이 미흡**하고 **기금 등의 활용이 부족**함

첫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 밝혔으나('23.11.), 구체적 지원 방안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올해 해당 계정 금액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음('23년 2.4조원→'24년 3.1조원)

둘째, '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포괄보조사업을 찾기 어려움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기금(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 부재함

◉ 이에, 다음과 같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이 요구됨

- **(지방세 감면 확대)** ①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수준 확대, ②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③ 지방세 감면 업종 추가
- **(이외 방안)** 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구체화, ② 기금 등의 재원 활용 방안 마련, ③ 낙후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수준 차별화 전략 검토

참고 기회발전특구 지정현황 ('24.6.20., 산자부 발표)

지 역		분 야	면적 (만평)
부산	동구, 남구	금융	22.7
대구	수성구	데이터센터, ICT/SW	7.7
	달성군	이차전재 소재, 전기차 부품	64.9
	북구	전기차·로봇 부품	10.1
대전	유성구	바이오	12.2
	유성구	방산	48.1
전북	**전주**	**탄소섬유**	**29.9**
	익산, 정읍	**동물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21.7**
	김제	**자동차부품, 특장차**	**36.9**
전남	광양, 여수, 순천	이차전지 소재	47
	목포, 해남	해상풍력 터빈 등	19
	해남	데이터센터 단지	20
	여수	LNG터미널, 수소 생산·발전	36
	순천	문화콘텐츠	3.8
	무안	항공정비, 화합물 반도체	9
경북	구미	반도체·이차전지·방산	57
	안동	바이오	7
	포항	이차전지 소재	77
	상주	이차전지 소재	11
	경주	물류센터, 자동차부품	7
	영주	자동차부품	3
경남	고성	해상풍력 구조물	47.6
제주	서귀포	우주항공	9.1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전북 후속조치 추진현황》

<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

- 지역 : 4개市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 총면적 : 88만평
- 산업분야 : 3개 분야 (탄소융복합, 동물의약품, 모빌리티)

※ 기업유치 현황 : 45개사 (앵커기업 11개사, 협력기업 34개사) / 1.5조원

○ **(추진방향)** 3개 분야별 유치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 특구 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추진 (시·군, 전북산업진흥원, 캠틱종합기술원 등 협업)

* 旣발굴 유치대상기업 (26개사), 분야별 핵심 기업, 旣 유치기업 연관기업 등

○ **(향후계획)** 市·유관기관 기업유치 합동 워크숍 (7월중), 분야별 市·유관기관 등과 기업유치 IR활동 추진 (연중), 기획과제 발굴 (~'24.12월)

3.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 기준, 절차,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며,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논의배경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간, 충청권 4개 자치단체(대전·세종·충남·충북)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음

○ 경기도를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자는 개편안도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왔고 최근 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을 포함하였음

□ 지방행정체제 현황과 개편 규정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17개(1 특별시, 6 광역시, 1 특별자치시, 6 도, 3 특별자치도),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226개(75 시, 82 군, 69 구)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통합(이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및 관련 규칙(「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및 행정구역 변경 절차, 각종 특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법)에 있음

□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와 주요 논의

(1)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사례

○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연혁

- 1995년 40개 시군구의 행정통합 39개 도·농복합시
- 1998년 여수시(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
- 2010년 7월 창원시(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통합)
- 2014년 7월 청주시(청주시, 청원군 통합)
- 2023년 7월 군위군 대구광역시로 편입

※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아직 없었음

(2)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관련 국회의 논의

○ 첫째, 경기북부의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입법안

- 제21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관련 5개 의원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제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개의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

○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초광역협력을 위한 입법안

- 제21대 국회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안과 더불어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
- 제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1건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

○ 셋째, 특정 지역의 성장 및 지위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

- 중부내륙연계지역 지원 관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올해 6월 27일에 시행 예정
- 제21대 국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원 법률안, 인천광역시 지원 법률안, 대전광역시를 대전특별자치시로 설치하는 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

- 제22대 국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원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었고, 전라남도를 전남특별자치도로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

○ 넷째,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도 일부 시(김포·구리·하남)의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됨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향후 과제

(1) 개편 절차·기준·지원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의 기준, 절차, 정부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있고, 통합 절차 등 상세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지역주민의 동의 전제: 합리적 절차 마련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모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임

○ 광역단위에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 비록,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사례

○ 그동안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자치권한의 확대와 각종 지역의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요청해 왔음

○ 앞으로 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더 낮은 최저임금은 가능한가?

○ 특히 최근 돌봄 노동이나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주장 등을 볼 때, 현행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의 설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및 법률상 제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분석 하에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

(1) 현행 법구조에서 본 최저임금 차등적용

○ 헌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8)에 따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그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도 볼 여지는 있음

○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에 비하여 이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감안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보아 '최저'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성립되고, 따라서 이보다 더 낮출 여지가 있음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더 낮은 최저임금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서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난점이 존재함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법구조에서 검토할 때, 현행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근거 마련 및 충분히 설득력 있는 통계를 통한 과학적 객관적 입증이 갖추어져야 함

□ 해외 사례

(1) 독일

○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2) 호주

○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있음. 호주의 최저임금은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3) 일본

○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별 최저임금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을 導入하였음

○ 특정 최저임금은 당해 특정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4) 소결

○ 현행 법규정 및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특히 과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점차 없애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 과정을 볼 때, 이를 사실상 역행하여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음

○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통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 '하향식' 논의와는 다름을 알 수 있음

□ 향후 과제

○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의도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음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업종 간 차이(근무 강도, 생산성 등)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 및 **과학적 통계 제시** 등이 전제된 아래에서 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설계하여 기준 최저임금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5. 강원 소상공인 살리는 최저임금 차등화 하자 [강원연구원]

‹‹ 연구요약 ››

◇ 강원지역 소상공인 변동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은 고용문제, 경영악화,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강원지역 경제는 80%이상을 소상공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강원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강원특별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

○ 소상공인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

- 최저임금, 아시아 최고 수준
  - ’23년 최저임금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이 홍콩, 대만, 일본보다 높음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 일본 평균961엔(8,717원)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물가상승률은 13%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약 48.7% 오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 대비 지나치게 높이 상승
- 중위임금 대비 수준도 OECD 30국 중 8번째
  -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2%
  -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국 중 8번째로 높고, G7 평균(49.8%)과 비교해도 높은 편
  -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점은 중위임금 45~60%이며, 유럽연합 의회에서도 최저임금 지침으로 중위임금 60%, 평균임금의 50%를 제시

○ 소상공인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 차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최고 전망
  - 지난 6년간(2018~2023) 최저임금 인상률 48.7%으로, 소상공인들의 변동비용을 급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
  -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차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과 고용 감소에 치명적

- 최악의 경영환경 도래

·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제도에 원재료, 에너지 비용, 임대료 등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三重苦 현상이 심화

·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이 가중될 경우, 폐업 업체의 증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 강원도 소상공인 현황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 실태

- 영업이익 감소

· '21년부터 '23년 강원도 소상공인 매출액은 연평균 4.6%로 성장하고, 강원지역의 임대료는 서울의 절반수준인 평균 88만원

·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못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임대료 연체율(소상공인 1/5이 임대료 연체)

-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 변동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액 증가,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 강원도 영세소상공인들은 1~2금융권보다 3금융권의 대출비율이 높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는 고금리의 신규 대출을 늘리는 악순환 결과 초래

○ 영업시간 단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소득 악화

- 영업시간 단축 또는 1인 경영체제 고착화

·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높은 인건비의 부담이 단시간 고용으로 이어져 영업시간의 단축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기술로 인력을 대체한 1인 경영체제 도입

·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악법으로 작용

- 시간제 근로자에게 소득 개선 효과 부족
  ·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내부 파이를 분배하려는 시도만 늘리고 있음
  · 즉, 사업체 존속을 위해 영세소상공인은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시간 단축을 시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의 소득 개선 효과 부족

□ 강원 소상공인 1순위 과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 강원자치도 선도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개선
  · 강원도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고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낮아 최저임금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에 문제가 큼
  ·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강원특별법에 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 발굴 추진
- 경영 규모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한 제도 도입
  · 일본은 지불 능력, 뉴질랜드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 스페인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 소상공인연합회 조사결과, 업종별/규모별 차등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이 확인되어 강원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업종별/규모별 임금 지불능력 산출
  · 동법에 근거하여 강원형 최저임금제도 도입

○ 강원 경제의 88%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 최저임금제를 보완할 소상공인 부담 경감책
  · 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성 급여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원 소상공인형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고려
  · 소상공인의 청년인력 수급 개선과 지역유출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형 청년장기취업 보조금제도 마련

- 외국인 인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대응
  -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허용업종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에 외국인 고용 업체 증가 전망
  -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제의 도입에 따른 지역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그에 따른 지역 경제 대응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6.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연구원)

《 연구요약 》

◇ 전북자치도를 공동체형 햇빛·바람 로컬에너지의 거점으로!

1.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필요성

1-1.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전북자치도 대응 모델 다양화 필요

□ 2024년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 정부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 공급(지산지소 : 地産地消)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24년 6월 본격 시행함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 변화>

기존에너지 시스템	분산에너지 시스템
· 대규모 발전소, 중앙집중형	· 지역 중심의 분산형
· 해안가 지역 중심 에너지 생산(원전, 화력 등) · 수도권 에너지 소비(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地産地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를 연구진 재구성

○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전력망 계통의 한계,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사회적 갈등 : 원전/풍력/태양광 입지 결정, 밀양 송전선 및 부안 방폐장 이슈 등
- 전력망 계통 : 출력제어(제주 사례), 계통 변동성 증대, 원거리 송전 비효율성 등
- 불균형 수급 :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와 비수도권 중심 전력 생산의 불균형

○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에너지를 주요 생산, 공급하는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 전력 직접거래 및 통합가상발전소 설립, 차등 전기요금 도입을 통한 지역 기업유치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 기업, 주택, 시설을 전력 생산·공급지역으로 분산 유도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전력 직접거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는 통합가상 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의 도입
- 지역별 송·배전 비용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 확보

□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

○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혁신 인프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을 기반으로 3단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전략을 발표('24년 6월)

- 1단계 : 분산자원 기반 시설이 구축중이며 전력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산업단지를 우선 지정 추진
- 2단계 : 전력자립도가 100%를 초과하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획 지역 추진
- 3단계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연계 신에너지형 특화지역을 지정

○ 전북자치도는 전력수요처, 재생에너지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산업단지 내 RE100 이행,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육성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완화, 수소 등 신에너지 특화

□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준비

○ 분산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소를 통합·관리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필요

- 소규모 발전사업을 20MW 규모로 묶어 전력소비지역과 발전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여건 확보 필요

1-2. 지역마을공동체, 소규모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의 구심점

□ 지역마을공동체, 지역 에너지전환의 주체

○ 지역 에너지전환은 지역 공동체가 구성원과 함께 기획 후 공동의 자본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에너지전환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

- 마을 유휴부지 발굴, 협동조합 결성, 참여 독려를 위한 에너지전환 교육, 태양광·풍력 등의 소규모 분산에너지 설치, 조합원 수익금 배당 등

○ 시민발전협동조합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113개의 협동조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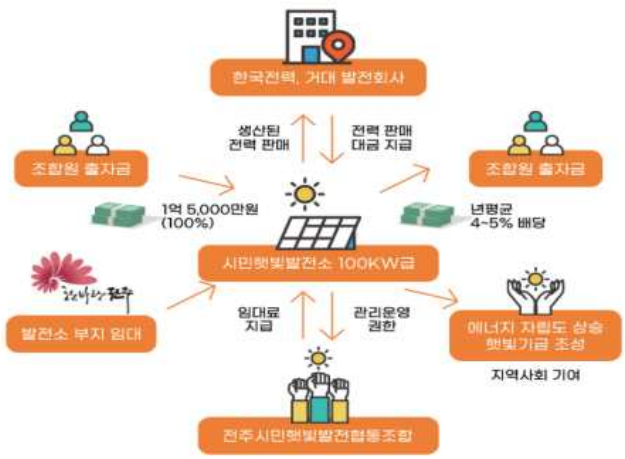
- 협동조합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북에는 총 3개의 협동조합(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북햇빛발전협동조합,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있음

<전국 시민발전 협종조합 현황(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경기
22	7	3	4	5	2	1	38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4	4	5	4	7	3	3	1

자료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2024)

(전주시민햇빛발전소 모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자료 : 전주시에너지센터(2024)

□ 전북자치도, 마을공동체 연계 에너지전환 모델 조성 적합지

○ 전북자치도는 공동의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 여건이 우수하여,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 전북자치도의 협동조합은 1,466개이며, 이 중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고창매산마을햇빛발전소협동조합 등 60개에 이름

<전국 일반협동조합 현황(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경기	세종
4,189	616	775	863	992	1,008	377	3,698	176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1,243	711	1,076	1,080	1,039	1,466	1,382	369	21,06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4)

(마이햇빛발전협동조합)



(고창매산마을햇빛발전소협동조합)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4)

○ 전북자치도는 2016년 「전북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별 특성을 살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중임

- 전북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2024)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 내 경제, 문화, 관광, 전통자원 등을 살린 1,083개의 생생마을이 운영 중임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현황(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25	32	52	60	76	57	79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54	66	78	78	76	69	58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2024.6.9. 기준)

1-3.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에너지 분권과 지역분권을 위한 필수요소

□ 전북자치도 대규모-소규모 분산에너지 연계 전력 자립화 필요

○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대규모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대규모 발전소가 없어 도내 필요한 전력을 100% 지역 내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분권이 완성되지는 못함

<전국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경기	세종
8.9	212	2.9	15.4	8.4	216	102.2	61	103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95.5	9.4	214.5	201.4	136.7	68.7	171.3	79.7	

출처 :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 전북자치도가 필요한 전력을 100%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내 지역별, 권역별 수요 맞춤 분산에너지 확산 필요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지역 이외 지역 특성에 맞춰 자산지소를 위한 소규모 전력 수요 연계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조성이 필요

□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의 수익으로 독자적 지역정책 추진 가능

○ 최근 마을 공동체가 창출한 에너지 수익을 지자체의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에서 얻어진 수익을 활용하여 신안군 해당읍면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연7.5%의 아동 장학적금 개설 등 지자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신안 햇빛아동 장학적금)



(신안 햇빛아동수당)



2.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사례

2-1. 햇빛자원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사례

□ 경기도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및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례

○ 경기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공공기관 RE100, 기업 RE100, 도민 RE100, 산업 RE100 등 4대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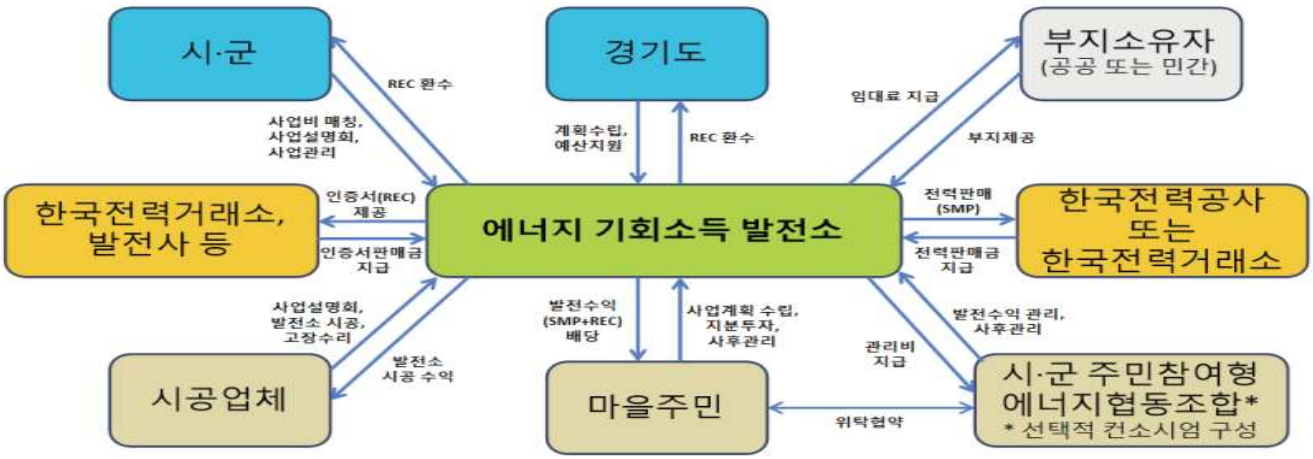
○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북부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 부지에 도민협동조합과 함께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함

- (공동체)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 내 500여명 도민 참여
- (햇빛자원) 협동조합 재원을 통해 경기도 북부청사 옥상, 주차장 내 360KW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 (수익환원) 조합원 수익 공유, 지역 에너지 빈곤층 사회공헌 활동 등

○ 경기도는 도민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4개 시군,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

- (공동체) 각 행정리별 협동조합(※행정리 공동체 컨소시엄 구성 필수)
- (햇빛자원) 도비(30%), 시비(50%), 자부담(20%)이 투입되어 마을 내 축사 등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
- (수익환원) 마을 내 참여 주민 수익(자부담 기준 연간 25% 수익률 전망) 공유(매월 10만 원)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 구조>



□ 전북자치도 익산시 성당포구 태양광발전수익 마을자치연금 사례

○ 익산시는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의 옥상 유휴 부지를 이용하여 7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수익을 마을자치연금으로 조성하여 지급 중

- (공동체) 성당포구 마을 공동체 법인
- (햇빛자원) 시비, 협업기관 출연금을 통해 마을 내 체험관과 화장실에 70KW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 (수익환원) 마을 내 만 70세 이상 주민 대상 수익 공유(매월 10만 원)

2-2. 바람자원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사례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행복바람 사례

○ 전라남도 곡성군은 오곡면 내 42M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기업인 '곡성행복바람'을 설립

- (공동체)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
- (바람자원) ㈜대명에너지가 4.2MW 육상 풍력 10기(42MW)의 발전단지 조성 예정(2026년 준공 목표)
- (수익환원) 공급인증서(REC) 수익에 대해 바람연금 형태로 수익 공유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재정자립 풍력발전사업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남원읍 수망리, 신흥1리, 위미3리, 하례2리의 4개 마을이 마을재정자립을 목적으로 12.4MW 규모의 풍력 발전시설을 공동 조성 계획

- (공동체) 제주 남원읍 4개 마을별 특수목적법인 설립
- (바람자원) 마을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여 6.2MW 해상 풍력 2기 규모(12.4MW)의 발전단지 조성 예정
- (수익환원) 부지 임대료, 환경보전기금, 채권수익 등의 수익은 마을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익 공유

3.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중심지 전북' 의 방향

3-1. 공동체형 에너지 전환 촉진의 환경 조성

□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속가능한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내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반전사업에 대한 내용 포함('24.6.28. 일부개정)

-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별도 조례를 제정함

<광역지자체 주민참여 조례 현황>

광역시도	조례
경기도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참여지원 조례

○ 전북자치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요구됨

-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 도모
- 전북자치도만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기획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 전북자치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14개 시군으로 조례 제정 확산 추진

- 나주, 당진, 진도 등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 에너지전환 관련 주민참여 조례는 확산되지 못한 실정
- 전북자치도의 경우도 군산시의 시민발전 주식회사 관련 조례 등을 제외하면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시군단위의 조례는 아직까지 없음
- 소규모 분산에너지 발전단지의 경우, 시군 단위에서 발굴, 촉진 및 공공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분산에너지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 확산 필요

□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공공적 관리 강화

○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관리가 요구됨

-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추진
-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자원의 기초통계, 교육훈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참여공동체 모집, 통합적 홍보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 경기, 전남, 제주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전담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지역개발공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경기도, 제주자치도는 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을 통해 공공적 관리를 강화
- 전남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중

3-2.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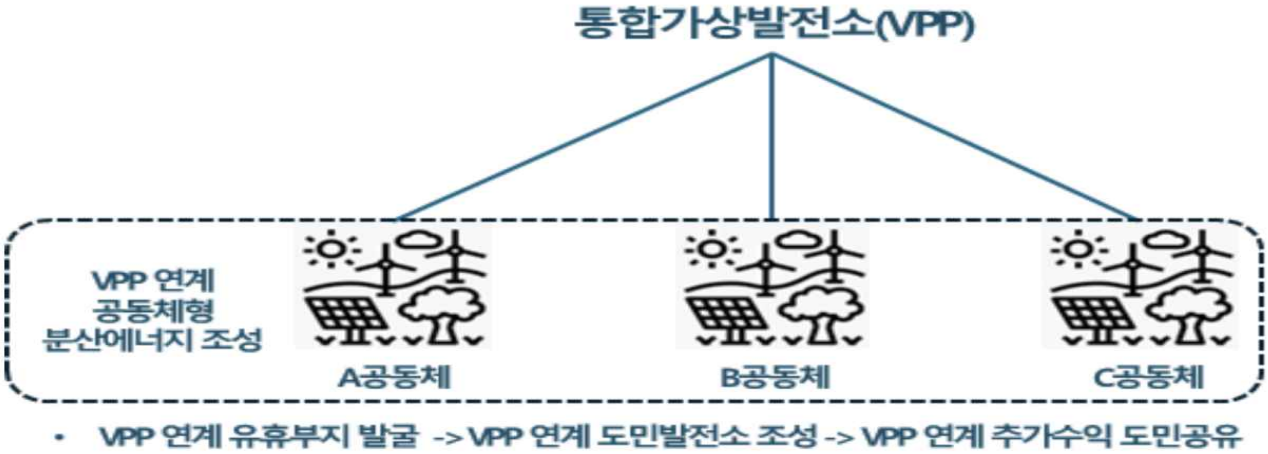
□ 공동체형 햇빛 · 바람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 기술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북자치도가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모델을 제안함

□ 통합가상발전소(VPP)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집합조성 모델

<통합가상발전소 연계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모델(안)>



○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개별적으로 조성된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모델에서 통합가상 발전소(VPP)사업이 가능한 집합 형태의 단지모델을 구상, 추진

- 전력계통이 가능한 전북자치도 생생마을 등에서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집단 구역을 발굴, 추진
- 발굴된 후보지역 내 참여마을 모집 후, 이를 통합가상발전소(VPP) 사업자와 연계하여 발전단지 조성

○ 통합가상발전소(VPP)를 조성할 경우, 통합가상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예측정산금을 추가로 발생시켜 공동체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

-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동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연계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모델

○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기관별 유휴부지 등에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모델 구상·추진

- 2024년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6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를 2% 감축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도입
- 기관별 유휴부지 내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도입 시 전북자치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서 에너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 절약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검토

○ 도와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이 전북개발공사-ECO융합섬유연구원이 추진하는 도민 태양광 발전소 구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전북개발공사-ECO융합섬유연구원의 도민발전소 모델을 도내 각 기관에 홍보 및 교육 강화

<전북개발공사-ECO융합섬유연구원 도민발전소 모델(안)>



자료 : 전북개발공사 내부자료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수익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

- 전북특별법 제31조4항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정 특례 등을 활용
- 제주도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을 통한 소규모풍력발전 사업 추진 사례(행원마을풍력발전소, 월정마을풍력발전소, 동북마을풍력발전소 등) 참고

<제주도 특성화마을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규모(MW)	기수
행원마을풍력발전소	2	1
월정마을풍력발전소	3	1
동북마을풍력발전소	2	1

□ 산업단지 연계 에너지 수요-공급 맞춤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모델

○ 소규모 공동체형 햇빛·풍력 분산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서는 수요-공급 맞춤이 필요하며, 대규모 전력수요가 있는 국가산업단지 모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전력량이 낮은 농공단지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

- 수행 주체도 초기 광역지자체 중심에서 전력수요와 연계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2년도 김제 서흥 농공단지가 '농공단지형 스마트 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어, 사업성과를 활용하여 농공단지 신규 조성 시 단지 내 전력을 공동체형 분산에너지와 결합하는 모델 구상 검토

<산업단지 연계 공동체 분산에너지 모델 발전방향>

1단계(전북자치도 시범)	2단계(기초지자체 확산)
• 새만금, 완주수소특화 등 국가산단 • 광역지자체 • 대규모 에너지	• 일반/농공 산업단지 등 • 기초지자체 • 소규모 에너지

7.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국회도서관)

《 연구요약 》

◇ 최근 미국에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
◇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음
◇ 이와 관련,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음

□ 도입

○ 미국의 연방정부는 국가의 부동산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므로 공공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데 소극적

○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시 또는 카운티)에서는 부동산 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 관련 법률안을 발의

○ **사회주택**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

- 미국은 오랫동안 공공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
- 공공주택 중 특히 **'저가임대주택'**을 **공급**
- 최근 사회주택이 새롭게 부상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 입법적 논의

○ 미국의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특징을 비교하면,

-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
- **저가임대주택제도**는 **특정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사회주택제도**는 **주택공급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특징 》

구 분	저가임대주택	사회주택
저렴한 임차료	○	○
장기간 제공	○	○
공급자 지원	융자 지원	투자, 건설을 위한 전담 기관 및 기금 설치
수요자 지원	저소득층 / 수혜대상자	중산층 / 저소득층 / 수혜대상자

□ 주별 주요 입법례

《 뉴욕주 》

○ 뉴욕주 의회는 1955년에 「유한영리주택회사법」을 제정

- 민간주택개발업체가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을 **겸비**한 유한영리주택회사를 설립,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
- 1955년 ~ 1981년 사이에 유한영리주택회사가 공동 소유하는 69,000개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저이율의 담보대출 및 세금 감면을 받아 10만개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 건설 됨

○ 2024년 2월에 코델 클레어 등 상원의원 5인과 에밀리 갤러거 등 하원의원 5인은 각각 '사회주택개발청'(Soci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

-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80%~165% 해당자)도 **포함**
- 이 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인 사회주택개발청이 뉴욕주 내에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규정 명시
- 구체적으로, **토지의 취득**, 기존 주택의 **개조 및 복구**, **영구적인 저렴한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법적 방안**들이 **규정**되어 있음

《 하와이주 》

○ 하와이주는 최근 사회주택의 임차료 및 소유권에 관한 일련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사회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확립

- '22년에 발의되어 법률로 통과된 **'상원 법안 제2251호'**에서는 부동산의 철거·개량·리모델링, 주택건설프로젝트 관련 기획·개발·건축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하와이주 공공주택청**에 **부여**
- 하와이주 공공주택청은 민간주택개발자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부동산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음

○ 하와이주 의회는 2023년에 **'모두를 위한 현지인 소유의 저가주택'**의 **「ALOHA법」**(Affordable, Locally Owned Homes for All Act)을 **제정**

- 도시재개발지역 내 **하와이주**와 **카운티 소유**의 **토지에**, 저가의 **주거용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도입**
- 하와이주 도시개발청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50%**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0%~140% 해당자)에게 **공급**
- 최초 주택을 매수하는 주민에게 저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선택권을 부여하며, 주민이 5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기로 합의하면 최대 99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 콜로라도주 》

○ 콜로라도주 의회는 '22년에 중산층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중산층주택청법」(Middle-Income Housing Authority Act)을 제정

- 이 법률에서 **'중산층'**이란, 저가임대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내 가구들의 **지역중위소득 80% ~ 1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을 가진 계층을 의미
- 중산층주택청이 임대주택의 취득, 건설, 리모델링, 소유, 운영 및 자금조달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전담**
- 중산층주택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고, 중산층주택청은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별도 예산을 편성

○ 중산층주택청은 콜로라도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되는 관계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위원회가 사회주택 건설프로젝트 제안서를 승인한 후 주택이 건설되면, 부동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중산층에게 사회주택을 공급

《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

○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사회주택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 이 사회주택의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80% ~ 150% 해당자)**도 **포함**

○ 공공주택기관인 주택기회위원회가 사회주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

- **주택기회위원회**는 그 산하에 **저가주택국, 주택금융국, 주택개발국** 등 3개 국을 두어,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
- 주택기회위원회는 사회주택의 소유자이자 개발자이며, 주택금융국이 사회주택개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주택개발국에 융자를 제공
- 외부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주택금융국**과 **협력**하여 **채권발행, 자금조달** 및 **융자상환**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음
- 주택기회위원회는 사회주택개발을 위한 회전융자기금인 '주택보급기금'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
-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1년~'22년에 총 100만 달러의 특별세출예산할당(안)을 승인하여 '26년까지 5년 프로젝트를 위한 주택보급기금을 설치
- 주택기회위원회가 저금리로 조달한 1억 달러의 채권은 향후 임차인에게 받을 수익금에서 상환
- 채권이 **상환된 후 임대료 수익금**은 **주택보급기금**에 다시 **전입**하거나 추가적인 **사회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

《 워싱턴주 시애틀시 》

○ 2023년 2월에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는 '시애틀시 사회주택개발청'을 신설하려는 '발의안 135호'가 시민투표로 통과

- '발의안 135호'는 '23년 3월에 시애틀 시장의 서명으로 시행
- 이 발의안에 따라 시애틀시 행정부에 **사회주택의 개발·소유·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주택개발청 신설**
- 사회주택개발청은 그 **법적 지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최상위 신용등급(AAA)의 채권을 발행하여 회전융자기금을 설치 할 수 있음

○ 향후 사회주택개발청은 시애틀시 **지역중위소득의 0%~120%**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회주택 공급 예정**

- 사회주택의 임차인은 본인의 가구 소득 중 30% 미만의 임차료를 지불, 임차인이 사회주택에 주거한 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
-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 퇴거 조치 전 분쟁해결 절차도 규정

《 미국 각 주(州) 주요 입법례 특징 》

구 분	수혜대상자	전담기관	특 징
뉴욕주	• 저소득층 • 중산층 (지역중위소득 80%~165% 해당자)	사회주택개발청 (Soci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	「유한영리주택회사법」에 따라 비영리 및 영리활동이 가능한 회사 설립
하와이주	•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중위소득 0%~140% 해당자)	하와이주 공공주택청 (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	5년 이상 가주 합의 조건으로 최대 99년의 장기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콜로라도주	• 중산층 (저가임대주택 가구의 지역 중위소득 80%~120% 해당자)	중산층주택청 (Middle-Income Housing Authority)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 저소득층 • 중산층 (지역중위소득 80%~150% 해당자)	주택기회위원회 (Housing Opportunities Commission)	- 관계기관이 회전융자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기금을 운용 - 민간사업자의 임대수익은 기금에 재전입하거나 추가 건설자금으로 사용
위싱턴주 (시애틀시)	•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중위소득 0%~120% 해당자)	시애틀시 사회주택개발청 (Seattle Social Housing Developer)	

≪ 시사점 ≫

○ 우리나라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중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제한 요건을 규정
- 우선공급의 경우 공급 대상 주택 중 60%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택만이 일반공급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자에게 공급될 수 있음

* 미국 주법의 중산층 범위에 비해, 우리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중산층 범위가 좁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저가임대주택**에 **상응**, 다만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자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대상 **수요자의 범위**에 **중산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주택과는 차이점이 있음

○ 최근 미국은 저가임대주택을 대신하여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에 다각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안 중 향후 우리의 입법 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입법 시 참고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수요증대	중산층이 수혜대상자	•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법률에 규정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또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이 공급되도록 법률에 명시
공급확대	기금설치	• 사회주택기관은 민간건설사업자가 사회주택 건설자금을 조달하도록 회전융자기금을 설치 - 민간건설사업자는 사회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 민간건설사업자는 사회주택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다시 기금에 전입하고 잔여 수익을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8억 4,900만원 감액된 10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149	44,200	10,351	△33,849	△76.5

자료: 국토교통부

○ 동 사업은 2021년 8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청년 월세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때 서울특별시는 30%, 그 외 지자체는 50%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으로, 별도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는데, 청년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 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이 지자체에 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요건을 검증한 뒤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이 지원된다.

○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중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매월 지급하고,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가 20만원을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청년 월세 저리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사업기간) 2022~2024년 한시
-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등은 청년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청년 원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원가구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유사사업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2024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급인원을 조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실제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당초 국토교통부는 주거부담이 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신청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동 사업의 신청·지원대상 선정·월세 지급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오류로 인해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월세 지원은 같은 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일정이 변경되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일정 변경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변경 사유
월세지원 신청기간	2022.4.~2023.3.	2022.8.~2023.8.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월세 지급기간	2022.8.~2024.9.	2022.11.~2024.12.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청년 11.9만명, 주거급여 대상 청년 3.3만명을 합한 15.2만명에게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월세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1월 19,269명에서 2023년 7월 69,707명으로 지급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토교통부가 당초 예상한 지급인원 15.2만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총사업비 추계]

◦**주거급여 대상 外: 11.9만명**, 1,302억원
- 서울 189억원 = 11.9만명 × 22%(서울 거주) × 20만원 × 12개월 × 30%보조
- 기타 1,114억원 = 11.9만명 × 78%(기타지역 거주) × 20만원 × 12개월 × 50%보조

◦**주거급여 대상: 3.3만명**, 67억원 (차액만 지급)
- 서울 10억원 = 3.3만명 × 22%(서울 거주) × (20만원-16.3만원*) × 12개월 × 30%보조
- 기타 57억원 = 3.3만명 × 78%(기타지역 거주) × (20만원-16.3만원*) × 12개월 × 50%보조

* '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평균 16.3만원 수준

→ 전체 지원대상 11.9만명 + 3.3만명 = 15.2만명

→ 총사업비(국비 기준) 1,302억원 + 67억원 = 1,369억원

→ 총사업비(지방비 포함) 1,369억원(국비) + 1,633억원(지방비) = 3,003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사업일정의 변경, 지급인원 저조 등으로 사업비의 실집행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예산 821억 4,900만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116억원 수준이며, 2023년 8월 기준 실집행액 역시 481억 9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전체)]

(단위: 백만원)

연도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82,149	82,149	82,149	-	82,149	11,600	66,217	4,332
2023.8	44,200	29,311	29,311	66,217	95,528	48,109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실집행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전체 총사업비 소요의 60%가 사업 1년차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월세 지원이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1년 내에 총사업비(지방비 포함) 3,003억원의 60%인 1,818억원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개월간 전체 지급된 사업비는 1,065억 2,300만원 수준이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지급인원	지급액 (국비+지방비)
2022년 11월	19,269	21,553,193,000
2022년 12월	30,142	
2023년 1월	35,453	84,969,853,000
2023년 2월	40,625	
2023년 3월	46,474	
2023년 4월	53,568	
2023년 5월	60,659	
2023년 6월	65,145	
2023년 7월	69,707	
합계	421,042	106,523,046,0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은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대상인 청년층의 관심도가 감소한 것 외에도 지자체의 유사 사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2022.6)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52개에 달하고 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중인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자체 월세지원을 받은 2.7만명(2021년 기준) 중 일부는 동 사업의 추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그런데 2024년 예산안에는 당초 사업기간별 연부액 103억 5,100만원이 전액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 7월까지의 지급인원이 당초 예상 대비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별 연부액(국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부액	82,149	44,200	10,351	136,900
산출근거	전체 국비 지원액의 60%	전체 국비 지원액의 33%	전체 국비 지원액의 7%	-

주: 전체 국비 지원액은 1,369억원이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003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로, 2024년 집행 가능한 예산의 규모는 해당 기간까지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요건 등을 검증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한 이후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급대상의 선정은 신청기간 종료 후 2~3개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급인원 선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실제 소요를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실제 사업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차별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황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산·관·학 협력을 통한 푸드테크 신기술 개발 지원과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신기술 실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4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	375	375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3개소를 선정하여 2024~2026년 3년 간 개소당 총사업비 105억원의 규모(국비 50%)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 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로 개소당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계획]

- 개념: 푸드테크 기업입주,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을 위한 시설
- 지원대상: 지자체, 중소식품·외식업체, 푸드테크 스타트업, 연구기관·대학교
- 사업규모: 2024~2026년 3개소, 총사업비 315억원
- 2024년 예산안: 3개소×10,500백만원×국비50%×1년차 실시설계비 2.4% = 375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 식품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집적된 식품 R&D 단지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개념 정의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의 차별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관 산업군 및 기관이 집적된 R&D 및 네트워크 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전라북도 익산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32만m2)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운영비 등을 포함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26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요]

- 사업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 사업규모: 산업단지 232만m^2(70만평),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 사업비: 5,535억원(국고 2,026억원, 지방비 743억원, 민자 2,766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또한 산·관·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식품·외식 기업 대상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일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식품 R&D 권역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권역 내에는 첨단기술 융합식품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식품존과 물류·유통 관련 업종을 유치하는 물류유통존과 포장·용기류 및 가공기계류 업종을 유치하는 식품연관산업존 등을 운영하고 있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및 포장·유통 등 식품연관산업 기술 개발에서 업종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5개 권역 현황]

구 분		면적	기업수	유치업종
산업시설권역	전략식품존	350천m^2	50개	• 기능성, 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합식품, 발효식품 • 식품첨가물, 설탕·전분 등 소재식품, 식자재·편이식품, 쌀 가공식품, 기호식품
	글로벌 식품기업존	450천m^2	30개	•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지역
	물류유통존	100천m^2	5개	• 물류·집배송관련 업종 • 유통(운반) 관련 업종 • 보관(저온 및 냉동저장) 등
	일반식품존	500천m^2	50개	• 제빵·제과류, 면류, 음료, 일반주류 • 육·유가공·낙농, 수산 가공류
	식품연관 산업존	100천m^2	15개	• 포장·용기류 • 음·식료품 가공기계류 •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류
식품 R&D 권역		54천m^2	10개 연구소	• 민간연구소, 기업·대학 부설 연구소 등
기업지원시설 (H/W) 권역		94천m^2	6개	• 식품기능성·안전성·패키징 센터 •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지원센터
테마파크 권역		244천m^2	-	• 공원, 글로벌 테마파크, 저수지 등
이주단지 등 기타 권역		413천m^2	-	• 이주택지, 오·폐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 도로·녹지 등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

○ 더욱이, 2021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을 2022년~2023년 간 80% 수준으로 달성하고 2024년 이후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2023년 8월말 기준 산업단지 분양률은 73.2%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집적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8월말
기업유치	89	96	114	126	127
기업 매출액	110,005	186,560	245,892	375,753	-
기업 고용규모	581	810	1,044	1,416	-
분양률	40.9	49.0	65.2	72.4	7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푸드테크 관련 신기술 개발·실증 등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식품기업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다만, 푸드테크가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산업 분야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로 적용되어 기존 식품산업 지원 사업과 중첩될 우려가 있으므로, 푸드테크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업종을 규정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포함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입소 대기자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4,800만원 증액된 5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154	4,834	5,982	1,148	23.7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자립지원 전담인력(150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5억 5,000만원, 활동지원 23억 3,600만원, 주거환경개선 6억, 보조기기 3억, 건강검진비 8,1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그 밖에 일반수용비 1,500만원, 정책연구비 1억을 편성하였다.

[2024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산출내역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4) 5,982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867백만원
가. 자립지원 전담인력 운영(2,550백만원)
· 인건비 : (100명×2,769천원×13개월×50%)+(50명×2,769천원× 6.5개월×50%)=2,250백만원
· 운영비 : (100명×400천원×12개월×50%)+(50명×400천원× 6개월×50%)=300백만원
나. 활동지원(2,336백만원)
· (206명×16,150원×80시간×11개월×50%)+(150명×16,150원× 80시간×8개월 ×50%)+(50명×16,150원×80시간×3개월×50%)= 2,336백만원
다. 주거환경개선(600백만원)
· '24년 전환(신규) 200명×6,000천원×50%=600백만원
라. 보조기기(300백만원)
· '24년 전환(신규) 200명×3,000천원×50%=300백만원
마. 건강검진비(81백만원)
· '24년 전환(누적) 406명×400천원×50%=8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5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실집행률이 '22년 35.1%, '23년 20.7%이며 '22~'23년 사업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평균 19.0%로 실적이 저조하나, 전년 대비 예산을 23.7% 증액하였으므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입소 대기자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22년 10개, '23년 신규 지자체 7개소가 추가되어 총 17개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동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자립 경로 조성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비스 지원 모형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대상자에 따라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하며, 주택 수리비, 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2022~2023년에 총 400명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9월 기준 목표 대비 19.0%인 76명의 지역사회 주거 전환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2022~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단위: 명)

구분	2022(1년차)	2023(2년차)	계
목표	200	200	400
실적	29	47	76
(달성률)	(14.5%)	(23.5%)	(19.0%)

주 1. 목표 : 예산 편성 기준
2. 실적 : 2023년 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2022~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실집행율은 35.1%이고 13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 집행률도 20.7%로 저조한 수준이다.

[2022~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54	2,154	2,154	2,154	-	2,154	755	-	1,399	35.1
2023	4,834	4,834	4,680	4,585	-	4,585	975	-	-	20.7

주 : 2023년 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달성률은 활동지원 자립준비형 14.7%, 집중지원형 44.0%, 주거 환경개선 36.0%, 보조기기 13.0%, 건강검진비 8.5%로 전반적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활동지원은 계획 200명 대비 실적 48명, 건강검진비도 목표 400명 대비 49명으로 집계되며, 주거환경개선은 및 보조기기는 목표 200명 대비 실적은 각 8명, 2명으로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적]

(단위: 명)

구분		활동지원[2]		주거 환경개선[3]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2022	목표	75	25	100	200	200
	실적	11	11	36	26	17
	(달성률)	(14.7%)	(44.0%)	(36.0%)	(13.0%)	(8.5%)
2023	목표[1]	150	50	200	200	400
	실적	30	18	8	2	49
	(달성률)	(20.0%)	(36.0%)	(4.0%)	(1.0%)	(12.3%)

주 1) 목표 : 예산편성 기준
2) 자립지원형(3) : 집중지원형(1) 비율로 설정
3) 대상자 입주 전 사전 주거환경개선 실적(건)
4) 2023년 8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 저조사유를 시범사업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문제로 시설 조사의 어려움, 보호자 반대, 지역사회 민원, 주택확보 어려움 등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자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동 사업은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자립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할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자립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장애인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을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 및 자립 관련 교육 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편, 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미충원하고 있으며, 평균 충원율은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1차 시범사업('22) 지역이나, 아직 인력이 전혀 충원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재직 중인 전담인력의 재직기간은 평균 9개월로 짧은 상태이므로 인력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취약한 구조로 채용 미완료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추가 채용 노력이 필요하며,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지원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A)	현원(B)	충원율(B/A)
계	88	60	68
서울	6	-	-
부산	9	9	100
대구	10	9	90
인천	8	8	100
광주	5	5	100
서산	3	3	100
전주	4	6	150
화순	2	2	100
경주	2	2	100
제주	8	5	63
성남	5	1	20
안산	5	3	60
의왕	5	1	20
인제	3	1	33
군산	5	2	40
익산	5	2	40
거창	3	1	33

주: 1. 2023년 9월 기준
2. 20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계획 100명(예산 기준, 대상자 4명당 전담인력 1명)
자료: 보건복지부

○ 상기 사업은 2022~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후, 2025년 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바, 2022~2023년 사업 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사업 대비 사업모형을 체계화하여 2024년 사업 및 본 사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실집행률이 '22년 35.1%, '23년 20.7%이며 '22~'23년 사업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평균 19.0%로 실적이 저조하나, 전년 대비 예산을 23.7% 증액하였으므로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